

제27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

-
- ◇ 주제: 2015년 소비자법학 회고와 전망
 - ◇ 일시: 2016년 2월 25일(목) 2시 - 6시
 - ◇ 장소: 한국소비자연맹
 - ◇ 주최: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연맹
-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연맹

제27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

◇ 대주제: 2015년 소비자법학 회고와 전망
◇ 일시: 2016년 2월 25일(목) 2시 - 6시
◇ 장소: 한국소비자연맹
◇ 주최: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연맹
◇ 접수: 13:40 ~ 14:00

▣ 2015년 소비자법학 회고와 전망 ▣

일 정	내 용	
개회식 (14:00~1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회: 고흥석 교수(선문대학교 법학과, 한국소비자법학회 총무이사) ▪ 개회사: 서희석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 축 사: 	
제1세션 (14:2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오시영 교수(송실대학교 법과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 발표(14:20-15:10): 2015년 소비자법정책의 동향 ▪ 발표: 고흥석 교수(선문대학교 법학과) ▪ 토론: 신국미 교수(청주대학교 지적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 발표(15:10-16:00): 2015년 소비자법연구의 동향 ▪ 발표: 서종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가정준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00~16:20	Coffee Break	
제2세션 (16:2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김진우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 발표(16:20-17:10): 2015년 소비자법판례의 동향 ▪ 발표: 이병준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이춘원 교수(광운대학교 법과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 발표(17:10-18:00): 2015년 소비자법소비자운동의 동향 ▪ 발표: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 토론: 김현수 교수(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18: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한국소비자법학회 상임이사회 (안건: 2016년 한국소비자법학회 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 	

목 차

제1주제

- ◆ 2015년 소비자법정책의 동향
/ 고 형 석 교수(선문대학교 법학과) 3

제2주제

- ◆ 2015년 소비자법연구의 동향
/ 서 종 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5

제3주제

- ◆ 2015년 소비자법판례의 동향
/ 이 병 준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7

제1주제

2015년 소비자법 · 정책의 동향

2015년 소비자법 · 정책의 동향

고형석*

〈차 례〉

I. 서론	V. 소비자안전법의 동향과 평가
II. 개인정보보호법의 동향과 평가	VI. 소비자피해구제법의 동향과 평가
III. 소비자거래법의 동향과 평가	VII. 소비자정책의 동향과 평가
IV. 소비자결제관련법의 동향과 평가	VIII. 결 론

I. 서 론

1980년 구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된 우리 소비자법은 이제 35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민법 등과 비교한다면 아직 그 역사가 길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법의 영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그 중요성을 단편적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소비자법은 완성된 형태가 아닌 계속적으로 변화 또는 발전하고 있는 법 영역이며, 산업 및 거래의 변화에 따라 그 어떤 법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법이다. 따라서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되어 왔던 소비자법의 제/개정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다른 법 영역과 달리 그 의미가 있다. 즉, 제/개정된 소비자법이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한 것인가를 평가함과 더불어 그 한계 내지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소비자법의 입법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법은 소비자전반에 관한 법¹⁾,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거래법, 소비자결제법, 소비자안전법 및 소비자피해구제법으로 구분하며,²⁾ 2015년에 제정 또는 개정된 소비자법의 내용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소비자정책의 경우 2015년 공정위 업무계획 중 소비자정책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1) 소비자전반에 관한 법인 소비자기본법은 2011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2) 소비자보호법의 분류는 2015년 2월에 발표하였던 2014년 소비자법 · 정책의 동향에서 제시하였던 분류체계와 동일하다.

<표-1> 연구대상 소비자법 및 정책

소비자법						소비자정책
소비자전반에 관한 법	개인정보 보호법	소비자 거래법	소비자결재법	소비자안전법	소비자피해 구제법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등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민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등	제품안전기본법 어린이제품안전법 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전자거래기본법 등	

II. 개인정보보호법의 동향과 평가

1. 개인정보보호관련 입법내용³⁾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5년 7월 24일; 시행 2016년 7월 25일)

1) 개정이유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현행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2014년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는 등 아직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개인정보 보호 인증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영리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책·제도 개선권고권 및 이행점검권, 자료제출요구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 위촉권을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제8조 제4항·제5항, 제8조의2, 제11조 제1항, 제40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4항). 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한다(제39조 제3항·제4항 및 제39조의2 신설). 다. 개인정보보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제32조의2 신설). 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수준을 강화한다(제70조 각 호 및 제74조의2 신설).

3) 신용정보보호법은 2015년 2월 16일에 개정되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2015년 2월에 발표하였던 2014년 소비자법·정책의 동향에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2) 정보통신망법 개정

1) 2015년 6월 22일 개정

①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유사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미동의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이다. 전자정부 제도의 정착으로 전자문서 중계자 제도를 활용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장기 휴업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1년 이상 휴업을 등록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②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중계자 등에 관한 제3장을 삭제한다(제18조부터 제21조). 나. 1년 이내 사업 미개시, 1년 이상 휴업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취소 사유에서 삭제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중 사업정지 명령을 삭제한다(제55조). 다. 전자문서 보관 및 공개제한 의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미동의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3천만원 이하로 한다(제76조).

2) 2015년 12월 1일 개정(2016년 6월 2일 시행)

① 개정이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미사용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의무 발생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대상업무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도 포함하려는 것이다. 그 밖에 인증심사의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업무만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②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파기의무 발생기간을 1년으로 하되, 다른 법령이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한다(제29조). 나. 업무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인증 대상의 기준으로 정보통신서비스부문 매출액을 명시한다(제47조 제2항). 다.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제47조 제3항). 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심사업무만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제47조 제6항 및 제7항). 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를 강행규정으로 한다(제47조 제9항, 제47조의5 제4항). 바. 지정취소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다(제64조의4).

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한다(제76조 제1항).

2. 개인정보관련 법 개정에 대한 평가

(1)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무과실책임주의라는 논란이 제기되었던 동법 제39조 제2항을 삭제하여 과실책임주의로 단일화하였다는 점과 징벌적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첫째, 개정전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채무자에게 부과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였다(동법 제39조 제1항). 그러나 동조 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면책이 아닌 책임감경을 규정하였다. 그 결과, 제1항에서는 과실책임주의를 제2항에서는 무과실책임주의를 규정하여 동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⁴⁾ 따라서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동조 제2항을 삭제하여 과실책임주의로 통일화하였다. 둘째, 2011년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개인정보침해의 경우에도 도입하였다. 다만,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법상 경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 마지막으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이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그 대상을 개인정보침해가 아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점을 해결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침해의 경우 그 손해액의 증명

4) 2015년 개정되기 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한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의 감경까지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손해배상책임의 감경요건으로 규정한 결과 과실책임이 아닌 무과실책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고형석, “개인정보침해와 손해배상책임의 원칙” 저스티스 제 145호, 2014, 76-79면; 고형석, “개인정보침해와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법조 제661호, 2011, 308-309면; 윤주희, “개인정보 침해현황과 이용자보호”, 법학논총 제33집 제1호, 2013, 352면; 김민호 외, 개인정보 보호 규제 합리화방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3, 167면). 이와 반대로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윤민섭, “금융기관 고객정보 유출사건의 동향과 금융소비자보호”, 소비자정책동향 제51호, 2014, 5면; 손형섭,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징과 앞으로의 방향”, 언론과법 제11권 제1호, 2012, 101면).

5) 최수정,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하도급거래에서의 법적 과제”, 『경제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3, 140-146면. 반면에 하도급법상 확대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대하여 계약에서 자유롭게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이의섭, 영미법 사례로 본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고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4, 40-44면). 그러나 동법은 모든 계약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격차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모든 계약 내용이 아닌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큰 사안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법은 단지 민법에 대한 특별사법이 아닌 경제법의 일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동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그 자체가 계약자유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형석, “하도급계약의 공정거래에 관한 연구”, 가천법학 제8권 제4호, 2015, 456면).

이 곤란하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즉,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법원에 의한 손해액의 인정은 도입되지 않은 점은 금번 개정에 있어서 한계라고 할 것이다.

(2) 정보통신망법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관련 규정의 개정이다. 즉, 개인 정보를 비롯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정보화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관련 규정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필수인증기관의 요건으로 정보통신서비스부문 매출액을 추가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필수인증기관의 범위가 매우 좁다는 점은 동 제도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필수인증기관을 확대할 경우, 새로운 의무증가로 인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다언을 요하지 않으며, 그 정보는 단지 피인증기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가 및 사회 그리고 정보주체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의무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인증취소에 대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무적 인증취소사유로 신설하였다. 물론 이러한 점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유 역시 인증기관의 개량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 반드시 인증을 실효화하여야 할 사항이다. 즉, 사후에 인증기준을 미달한 경우 등에도 계속 인증을 인정하고, 그 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인증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상반될 뿐만 아니라 이를 신뢰한 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반드시 인증을 실효하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⁶⁾

III. 소비자거래법⁷⁾의 동향과 평가

1. 할부거래법 개정동향(2015년 7월 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에 따른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간의 회원 이전방법으로 계약이전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계약이전 과정에서 각종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간의 계약이전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2. 할부거래법 개정에 대한 평가

6) 현행법에서는 일괄하여 인증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의 취소는 일단 효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그 성립상 하자를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그 법률상 효력을 원칙적으로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이다(이규호, “행정행위의 하자”, 사법행정 제55권 제4호 2014, 29면). 따라서 의무적 인증취소사유에는 타당한 용어이지만, 사후에 인증기준을 미달한 경우 등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인증실효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7) 소비자거래법으로는 약관규제법, 표시광고공정화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이 대표적이지만, 할부거래법을 제외하고 다른 법들은 2015년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 개정

구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되었다. 그 결과,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분할지급함과 동시 또는 그 후에 공급받는 계약으로 정의하여 대금의 일부를 분할 지급하던 도중에 상이 발생하여 상조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은 후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⁸⁾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개정하였으며, 후불식 할부계약에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계약을 배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2)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규정 신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회원 중 일부를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인수)에 관한 문제가 다발하였지만, 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곤란하였다. 이에 금번 개정에서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금번 개정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모두에게 부적절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은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최고기간 내에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은 계약인수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민법에서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학설은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그 이전을 인정하고 있다.⁹⁾ 즉, 계약인수는 채권 및 채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채무인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최고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거절로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인수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그 반대로 규정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이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이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함으로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개정법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1회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게재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일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동 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항). 그 결과, 회원 1인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등 매우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및 합병 등과 같은 요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 셋째, 이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산에서 선수금을 제외한 부채를

8) 고흥석,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에 관한 연구”, 법조 제654호, 2011, 163-171면.

9) 박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9, 240면; 송덕수, 채권총론, 박영사, 2015, 389면; 김준호, 채권법, 법문사, 2011, 236면; 고명식, 채권총론, 동방문화사, 2012, 242면; 양형우, 민법의 세계, 진원사, 2014, 1136면 등. 판례 역시 동일하다.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한다. 이러한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대판 2013.11.14, 2012다97840).

차감한 잔여재산 중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납입한 총선수금에서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배분한 금액은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납입한 총선수금에서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에 동의하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배분한 금액은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배분한다. 이러한 자산 배분방식은 회사의 분할에 적합한 방식이며, 계약인수에는 적합하지 않다. 즉, 계약인수는 그 계약에 관한 채권 및 채무의 양도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 양도하면 될 뿐, 그 이외의 자산은 양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전하는 회원의 선수금만을 양도하면 될 뿐 그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도록 하는 것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의 본질에 반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금번 할부거래법 개정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관한 내용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모두에게 적합하지 않은 개정이다.¹⁰⁾

IV. 소비자결제관련법의 동향과 평가

1. 소비자결제관련법의 개정 동향

(1)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VAN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결제망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로 직무의 특성상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나 금융관련법령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금융당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다. 최근 신용카드와 관련한 대규모의 정보유출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VAN사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법의 체계 내에 VAN사를 포섭함으로써 금융당국이 직접 VAN사의 신용정보보호 실태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려는 것이다. 한편, 최근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 사이에 과도한 금품이 제공·수수됨에 따라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2) 전자금융거래법

현행법은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수·양도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법 행위를 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 근거를 두지 아니함에 따라 대포통장 등의 불법매매 광고 행위는 대포통장이 실제로 매매되지 아니하는 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로 인해 인터넷 또는 주택가 등에 대포통장 등의 불법 양수·양도 등을 모집하는 광고행위가 끊이지 않아 대포통장 등의 불법 양수·양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접근매체의 양수·양도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과 함께 불법 광고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사용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유인하는 광고 행위 등을 규제하려는 것이다(제6조 제3항 제5호 및 제6조의2 신설).

1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희석,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의 이전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 167면 이하 참조.

2. 소비자결제관련법에 대한 평가

(1)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VAN사)를 금융정보관리대상에 포함시킨 점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성이 높으며, 이 역시 결제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또한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 사이에 과도한 금품의 제공·수수는 이러한자들간의 문제만이 아닌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 등의 축소라는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개정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 전자금융거래법

대포통장 등은 소비자금융사기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거래뿐만 아니라 광고행위까지 금지함과 더불어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까지 사용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은 시기적절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지대상에 전화번호만을 규정하였다는 점은 최근 이러한 불법 광고에 사용되는 수단이 전화만이 아닌 온라인 게시판, 전자메일 등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러한 광고수단까지 포섭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V. 소비자안전법의 동향과 평가

1. 소비자안전관련법의 입법동향

(1) 제품안전기본법(2015년 5월)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의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자주 적발됨에도 불구하고 제품수거 등의 명령의 행정처분만이 가능하여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거나 신고 또는 확인 등을 한 후,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여 제품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한다(제11조, 제26조). 또한,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통해 제품 수거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라도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적발에 한계가 있고 지속적인 시장 감시에도 불구하고 불법·불량제품이 끊임없이 유통되고 있어 세관과 불법제품의 수입자 정보를 공유하고 통관전에 안전성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불법·불량제품의 반송·폐기 조치 등을 통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제9조의2).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2015년 5월)

품질경영체제인증을 수행하는 인증기관을 인정하는 인정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업무규정과 인정업무 운영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인정기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이미 보고하고 있어 중복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기관 및 기업 등에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실태조사,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인증기관 및 기업 등의 매년 정기 사후관리시 관련 자료 확보 등의 대체방안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중복 부담 요소이다. 이에 불필요한 규제 개선의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인정기관, 인증기관 및 기업 등의 운영현황보고, 자료제출 등 중복 부담을 제거하고 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제7조 제5항, 제7조의2 제2항 및 제41조 제1항 제3호 삭제).

(3)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2016년 1월)

현행법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가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을 통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비대면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중 단순히 거래의 장과 시스템만을 제공하는 오픈마켓의 경우, 실제 거래를 살펴보면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제품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신판매중개자가 안전인증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유사한 안전인증 등의 의무를 두고 있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중개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예외 규정을 두도록 개정된 바 있다. 이에 안전인증 등이 없는 어린이제품의 중개 금지 조항에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비현실적인 규제를 제거하려는 것이다(제30조).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 개정이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하도록 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을 도모하며, 행정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제한하고자 한다. 또한 품질관리인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품질관리인은 자신의 업무 활동내역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하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영업소별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올바른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정책변화를 조기에 인식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표시·광고의 심의 위탁기관을 확대하여 심의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 제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믿고 섭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한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은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은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수거 등 행정기관의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자가

품질검사 결과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건강기능식품의제조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를 검사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이외에 긴급대응 제도 도입,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연 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제5조, 제22조, 제32조, 제33조 및 제45조). 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의 제한(제9조 제1항 제4호·제5호 및 제2항 제4호·제5호 신설)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에는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행정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제품 및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품질관리인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관리인이 직무 등에 태만할 경우 해당 영업자에게 품질관리인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제12조 제2항 및 제12조의2 신설). 라. 품질관리인은 자신의 업무 활동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2조 제5항 및 제47조 제2항 제5호의2 신설). 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영업소별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올바른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안전위생교육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전문기관이나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제13조 제1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바. 표시·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이외에 소비자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제16조 제2항). 사.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유전자변형 품목의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한다(제17조의2 신설). 아.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이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위생검사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14일 이내에 위생검사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에 알리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제20조의2 신설). 자.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제21조 제3항 및 제45조 제5호의2 신설). 차.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고시되었거나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재료를 검사하여 확인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도록 한다(제21조의2 신설). 카.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허가사항·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제32조 제1항). 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과세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제37조). 파. 긴급대응에 관한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17조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제38조 제1항 제3호의2 신설). 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탁을 받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뇌물 수수 등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한다(제42조의2 신설).

(5) 식품안전기본법(2014년 5월)

1) 개정이유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식품의 수입단계에서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청과 수입식품 등을 관리하는 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나, 현행법 상 “관계중앙행정기관”에 관세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또한, 현재 이력추적 업무에 대하여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 등 식품의 원재료가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력추적 정보 상호간에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식품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이력추적이 어려운 바, 이력추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처 간 이력추적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위해 발생 시 신속한 이력추적을 통해 식품 안전관리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경찰·검찰 등의 수사기관은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공표 전에 필요한 경우 위해식품 등의 회수, 폐기 조치 등의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수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공표 전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의무가 없어 공표 전에 이에 따른 신속한 행정조치 등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기관이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할 경우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위해식품에 대해 신속한 행정처분 등의 사후조치를 하고,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관세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정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제2조 제4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식품안전법령등”에 포함하여 「식품안전기본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제2조 제5호). 다. 식품등의 이력추적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은 타 행정기관에 이력추적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제18조 제6항 신설). 라.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기관은 위반 사실 공표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한다(제26조 제3항).

(6) 식품위생법

1) 2015년 5월 개정

① 개정이유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2010년 기준, 하루 4,878mg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소비자가 식

품의 나트륨 함량을 알기 쉽도록 식품군별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도입하여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 한편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외식산업의 증가로 먹을거리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음식점에 대한 위생 강화가 필요하고, 지자체별로 위생과는 무관한 음식점 인증이 남발되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가 요구된다. 따라서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여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음식점의 위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

② 주요내용

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모양을 이용하여 포장지 겉면에 표시하도록 한다(제11조의2제1항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제11조의2 제2항 신설). 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접객업의 위생등급 평가 기준에 따라 위생등급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제47조의2 제1항 신설). 라. 위생등급을 부여받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위생등급을 표시하고 그것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한다(제47조의2 제4항 신설). 마. 위생등급을 부여받은 업소는 일정 기간 동안 출입·검사·수거 등을 면제받고, 위생설비 시설개선에 필요한 용자 사업 및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제47조의2 제6항 신설).

2) 2014년 3월

① 개정이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는 원재료 사용 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규정하도록 한다. 또한 경매,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영업자의 영업 승계에 따른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고,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 관련 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중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편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 제도 의무를 면제하여 이중적 규제를 완화하며, 식품업체들의 HACCP 인증 참여를 유인하여 HACCP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식품안전정보원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식품안전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이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영업소를 출입하여 식품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조사기관,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여 관리·감독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기준과 규격을 인정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영업자가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식품 등을 자발적으로 회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식품 등의 회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하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부적합 식품을 제조공정에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식품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HACCP)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 HACCP 업체에 대한 인증과 같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에 대한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내용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② 주요내용

가. 한시적인 기준과 규격 인정 대상 등 확대(제7조 제2항) :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시적으로 기준과 규격을 인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식품 등의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을 고시에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이 식품 등에 표시되는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는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한다(제12조의2). 라. 소속 공무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관리원이 조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뿐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한다(제22조 제3항, 제33조 제7항, 제60조의4 제2항, 제70조 제2항, 제72조 제4항, 제79조 제5항). 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HACCP 인증)업소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한 업소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의무를 면제한다(제31조의2 신설). 바. 식품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한다(제32조 제1항). 사. 경매·환가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인수자의 영업 승계 규정을 보완한다(제39조 제2항). 아. 총리령에 위임한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중요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한다(제42조 제1항 삭제, 제4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자. 영업자에게 표시기준 준수 의무,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 의무 또는 허위표시 금지의무를 위반한 식품 등에 대한 회수의무를 부과하고, 영업자가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제45조 제1항). 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제48조의2 신설). 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하도록 하되,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인증 유효기간 내에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한다(제48조의3 신설). 타. 식품안전정보원의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제68조 제1항 제1호의2·제7호 신설). 파.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제75조 제1항 및 제97조). 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업무평가 및 포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제90조의3 신설).

2. 소비자안전관련법에 대한 평가

(1) 제품안전기본법

금번 개정법은 인증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이며, 이는 인증제도의 근간을 파괴함과 더불어 국민의 인증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는 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 또한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 강화 역시 안전문제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 재량행위로 규정함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 즉,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도 그 권한 행사를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결과, 이를 인식하더라도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그 자체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사이버몰 이용허락형 통신판매중개에서 통신판매중개자가 안전인증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반영하여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물론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허위표시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충분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그 정보를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그 입력 역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통신판매중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부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이외에 소비자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구 법에서는 심의단체에 대해 사업자단체로 한정하였던 것을 소비자단체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를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로 규정한 결과, 그 심의역량과 관계없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며, 사업자단체에게 그 권한을 부여한 점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심의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요건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자격요건은 매우 추상적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이 실질적인 통제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독립된 심의기관을 설립 및 운영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VI.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법의 동향과 평가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2015년 6월 개정)

(1) 개정이유

실효적인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조정안에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과정에서 사업자의 법령위반을 발견한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유사 입법례에 따라 전자문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명을 법률에서 명시하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제22조 제1항). 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제33조 제5항). 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도록 한다(제33조의2 신설).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에 대한 평가

금번 개정법은 분쟁조정에 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함과 더불어 분쟁조정의 성립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완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조정안의 내용에 원상회복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지만, 이는 새로운 내용이 아닌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 다음으로 조정대상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다만, 분쟁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또는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동법 제33조의2). 이러한 규정의 신설취지는 조정의 성립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지만, 과연 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일치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즉,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간 사법적 법률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한 것은 조정위원회의 역할과 맞지 않는다.¹¹⁾ 이는 분쟁조정을 위해 당사자의 자료제출 등이 필요하지만, 위법사실 등을 감추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그 결과, 조정이 활성화되기 보다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보상에 합의하고 시정한 경우를 제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사와 형사(행정) 규제가 상이하므로, 시정조치를 제외하고, 과태료 및 형사제재에 있어서 보상과 시정으로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실상 분쟁당사자의 조정성립을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

11)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사건 처리 도중 형사사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 고발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VII. 소비자정책의 동향과 평가

1.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중 소비자정책관련 내용¹²⁾

(1) 신유형 거래 분야의 경쟁촉진을 통한 창의·혁신 역량 제고

전자·온라인·모바일 형태의 상품권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1/4분기)할 계획이다. 기존의 지류(紙類) 상품권과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이 발행·유통¹³⁾되고 있어 기존 상품권 표준약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¹⁴⁾을 반영할 계획이다.

(2)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 구현

첫째, 여러 기관의 소비자정책 연계기능 강화 및 소비자단체 등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소비자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각 부처의 제도·정책 등 소비자 지향성 평가과제를 발굴(상반기)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셋째, 소비자의 구매결정-제품이용-피해구제 등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15년~'17년)할 계획이다.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소비자피해구제시스템을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¹⁵⁾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2017년)할 계획이다. 넷째,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을 추진(소비자기본법 개정, 상반기)할 계획이다. 소비자기본법 개정후 기금설립추진단을 구성하여 기금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하반기). 다섯째, 최근 급증하는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 관련 종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정보 제공, 국제공조 등 이미 발표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구매·배송 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3/4분기)할 계획이다. 여섯째, 국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관혼상제·레저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하고, 부동산·전자상거래 분야의 거짓·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분야 등에서 온라인 회원 가입 시 온라인 해지 가능 여부 등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준수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외국계 불법 온라인 피라미드¹⁶⁾로 인한 소비자 피해¹⁷⁾ 방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이트 폐쇄·차단조치 의뢰, 국내 책임자 수사의뢰, 해당 국가 경쟁 당국·협회와의 협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방안 -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 2015년 1월 29일.

13) 대체로 지류 상품권은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직접 발행하는 반면, 신유형 상품권은 이통사·플랫폼사업자가 발행하고 물품은 별도 사업자가 제공하는 구조.

14) (예) 발행자와 다수 상품공급자 간에 주로 단기 공급계약을 통해 발행되고 있어 지류 상품권 수준의 유효기간(5년) 설정이 곤란한 측면.

15) 아동·청소년기(아동용품, 교육서비스), 청년기(결혼정보업, 전자상거래), 중년기(아파트·자동차 구매), 노년기(건강식품, 상조업).

16) 인터넷 발달, 초국경적거래 확대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사실상의 금전거래행위를 하는 외국계 불법 피라미드 업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7) 높은 이익보장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하며, 미등록 업체이므로 피해발생시 보상이 불가능(2014년 총 13개 업체·33명 국내가담자 경찰 수사의뢰, 111개 관련 사이트를 폐쇄 조치).

2.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에 대한 평가

(1)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신유형 상품권의 활성화와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2015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시하였다.¹⁸⁾ 舊 상품권법의 폐지로 인하여 그 동안 상품권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는 舊 상품권 표준약관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해결되었지만, 이는 지류상품권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신유형 상품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신유형 표준약관은 이러한 상품권 시장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러한 신유형 표준약관의 취지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그 전제로 표준약관의 내용이 공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유형 표준약관은 그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에서부터 시작하여 현행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환불, 발행자의 책임, 약관의 해석 등)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약관규제법 등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소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舊 상품권법을 비롯하여 舊 상품권 표준약관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인 유효기간과 소멸시효를 그대로 사용한 결과, 사법(私法)의 기본적인 내용에도 반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관할에 대하여는 무의미하게 규정한 결과, 약관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품권 사용과 관련하여 규정하였어야 할 지급의 효력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표준약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유형 표준약관은 그 내용에 있어서 불공정한 내용을 다수 담고 있으며, 그 내용의 추상성 및 필수적 사항에 대한 미기재로 인하여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달성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따라서 신유형 표준약관은 기존 발행자의 잘못된 관행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⁹⁾

(2) 해외구매약관

온라인 환경의 발전, 고학력 소비자의 증가 및 구매대행업체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해외직구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기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은 시급하다. 다만, 이러한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해외구매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규명이 선행과제이다. 즉, 재화에 대한 매매계약인지 아니면 구매대행서비스 이용계약인지에 대한 규명이 선행된 후 그 법률관계를 분석하고, 현행 업체의 약관이 이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계약에 있어서 해외 사업자와의 법률관계에 우리 소비자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사업자 소재지 국가의 법에 대한 분석은 소비자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시초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해외구매대행 표준약관을 마련하기 위해 작업 중이며,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이 분야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표준약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3) 소비자권익증진기금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핵심적인 논란이 되었던 것은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신설이다. 이는

18)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내용과 근거에 대해서는 김인숙, 윤민섭, 정영훈, 정연희, 김재성. 신유형 상품권의 약관운용 실태조사 및 상품권 표준약관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4 참조.

19) 고형석,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관한 연구”, 입법과 정책 제7권 제1호, 2015, 495-496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²⁰⁾ 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운룡의원 대표발의 ; 2014년 12월, 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2015년 7월)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현재 상위위원회에서조차 논의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 국회 회기내에 처리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고 평가되며, 제20대 국회의 개원과 더불어 이에 관한 논의 및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법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적 차원에서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²¹⁾

VIII. 결 론

2015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소비자법·정책의 추진 동향은 그 이전의 추진내용과 비교할 때, 거의 유사한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종전과 비교하여 2015년에 이루어진 법 개정 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자, 주목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다. 동 제도는 영미법에서 인정되었으며, 2011년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우리 법제에 처음 도입되었지만, 소비자법 분야에 도입된 것은 2015년이 처음이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이 본질적인 소비자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소비자 역시 동법상 정보주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의미는 적지 않다. 그러나 사업자간 거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에 있어서 그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향후 소비자법의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거래법 분야에서는 할부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2015년 개정 할부거래법(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은 소비자보호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본질에도 적합하지 않은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금번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며,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인수)의 본질에 적합하고, 이 분야의 소비자보호에 충실한 방향으로 개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안전분야법제에 대한 개정은 비교적 많은 법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소비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지만, 소비자안전 확보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즉,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소비자안전확보에 있어서 한계점으로 지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기속행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책임제한에 있어서는 중개자라는 점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장에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그 책임제한에 관한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광고심의회에 있어서 소비자단체를 추가하였다는 점은 긍정적 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보다는 독립된 전문기관을 신설하여 이를 통해 광고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피해구제관련 법 개정 에 있어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을 통해 조정위원회의 위법행위 통지의무를 신설하였지만, 이는 분쟁조정의 취지와 상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현행

20) 한국개발연구원,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4, 5면.

21)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연구로는 한국개발연구원, 위의 용역보고서; 지광석·김성천·김인숙, 소비자권익 증진기금의 설치 및 운용방안, 한국소비자원, 2012; 지광석,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안전보고서, 한국소비자원, 2013; 한국미래소비자포럼,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조성을 위한 입법화 세미나 자료집, 2011, 한국미래소비자포럼,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위한 소비자권익기금 설치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13 등.

법의 내용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법의 기본적인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추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민간과의 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조성은 시급하다. 이에 대해 사업자측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국가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해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헌법 제124조에서 ‘국가는 전건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조성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단지 소비자보호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닌 사업자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는 것이므로 산업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소비자피해가 집단적 피해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미진한 점은 2015년 소비자법·정책 추진에 있어서 큰 미흡점으로 지적된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그 적용범위는 개인정보침해에 국한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Discovery 제도와 더불어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이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2주제

2015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2015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서종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 들어가는 말

“2015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에 관한 발제는 작년(“2014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에 이어 두 번째 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2015년)의 연구동향을 조감하는 것을 목표로 본고를 작성해 보고자 한다. 본 발표문에 담지 못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충하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2015년에 있었던 소비자법에 관한 주요 학술대회를 개관하고(Ⅱ), 이어서 소비자법의 주요 분야별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었는지를 알아본다. 그 주요 분야로는 약관(Ⅲ), 제조물책임(Ⅳ), 금융소비자(Ⅴ), 개인정보보호(Ⅵ), 소비자법 관련 서적(Ⅶ)으로 나누었으며, 이에 속하지 않는 주제들은 기타(Ⅷ)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2016년 소비자법 연구의 전망을 간단히 언급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Ⅸ).

Ⅱ. 2015년 한국소비자법학회 및 기타 학술대회

한국소비자법학회는 정기학술대회 6차례(제21회 ~ 제26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판례연구회 학술대회 2차례(2015년 제1회 ~ 2015년 제2회), 그리고 한국소비자법학회 해외법제연구회학술대회가 2차례(2015년 제1회 ~ 2015년 제2회)를 진행하였다.

1. 제21회 한국소비자법학회 정기학술대회

2015. 2. 27.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개최된 <제21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는 “2014년 소비자법학 회고”라는 대주제 아래 다음과 같은 소주제들이 발표되었다.¹⁾

- (1) 고흥석(선문대학교), “2014년 소비자법·정책의 동향”
- (2) 김진우(한국외국어대학교), “2014년 소비자법연구의 동향”
- (3) 나종연(서울대학교), “2014년 소비자이슈 및 소비자운동의 동향”
- (4) 이병준(한국외국어대학교), “2014 소비자법 판례의 동향”
- (5) 신영수(경북대학교), “소비자법 분야의 2014년 공정위 심결 분석”
- (6) 윤태영(아주대학교), “2014년 소비자분쟁조정사례의 동향과 성과”

2. 제22회 한국소비자법학회 정기학술대회

1) 대부분의 글은 소비자법연구 제1권 제1호, 2015.8(창간호)의 특집논문으로 게재되어 수록되어 있다.

2015. 5. 19. 한국의국어대학교에서 개최된 <제22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는 “한·중 전자상거래법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대주제 아래 다음과 같은 소주제들이 발표되었다.

- (1) 소호핑(Su Hao Peng, 중국 대외무역경제대학 법학원),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상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율(가칭)”
- (2) 이병준(한국의국어대학교), “한국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규율대상의 현황과 과제”
- (3) 정지연(서울시 전자거래센터), “한중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

3. 제23회 한국소비자법학회 정기학술대회

2015. 5. 22. 가천대학교에서 개최된 <제23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 규율과 이용자보호”라는 대주제 아래 다음과 같은 소주제들이 발표되었다.

- (1) 서종희(국민대학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에 대한 계약책임 - 저작권법 제102조 및 제104조상의 OSP유형에 따른 계약책임내용을 중심으로 -”
- (2) 최민식(한국인터넷기업협회), “OSP에 대한 우리 법제의 규율현황과 문제점”
- (3) 손승우(단국대학교), “OSP 책임에 대한 규제의 관점과 정합성의 문제”
- (4) 박신욱(경남대학교), “OSP와 청소년 이용자 보호 현황과 문제점”

4. 제24회 한국소비자법학회 정기학술대회

2015. 8. 27.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 제24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는 “한·중·일 국제거래 소비자분쟁 해결”이라는 대주제 아래 오전 공개 세미나와 오후 (전문가)학술대회로 진행되어 아래와 같은 소주제들이 발표되었다.

<공개 세미나>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한·중·일의 경험과 전망’ 발표(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 12315 소비자상담국 장다오양 국장, 일본국민생활센터 상담부 하야시 다이스케 과장,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 정동영 팀장)

<(전문가)학술대회>

- (1) 수하오핑(중국 대외무역경제대학), “한·중·일 국제사법에서의 소비자계약”
- (2) 테라카와 요(일본 관서대학), “한·중·일 소비자계약에서의 철회권”
- (3) 김성천(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조화를 위한 제언”

5. 제25회 한국소비자법학회 정기학술대회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전자결제와 법적 규제”라는 주제로 한국소비자법학회/국가경쟁력연구원과 중국 소비자보호법학연구회(소비자법학회)/대외경제무역대학교(후원 : 인기협 및

(주) 부영, 베이징시 초양구변호사협회/베이징시 아이뎬구 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중/일 국제세미나(제25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를 겸함)가 개최되었다. 세미나 주제는 이하와 같다.

- (1) "한중일의 대표적인 전자결제의 실무의 현황과 문제점"
- (2) "한중일 전자결제의 법제현황 및 문제점"
- (3) "국제전자상거래의 현황과 과제"

6. 제26회 한국소비자법학회 정기학술대회

2015. 11. 20. 단국대학교에서 개최된 <제26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는 "소비자법의 정체성 II"이라는 대주제 아래 다음과 같은 소주제들이 발표되었다.

- (1) 이상정(경희대학교), "지적재산과 소비자보호"
- (2) 최봉석(동국대학교), "환경법상 리스크 관리의 소비자법적 함의"
- (3) 정준현(단국대학교), "초연결사회의 위험격차와 정보약자보호"
- (4) 김성천(한국소비자원), "소송법과 소비자법의 연계에 관한 고찰"

7. 제2015-1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판례연구회 학술대회

2015. 4. 4.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제2015-1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판례연구회 학술대회>는 다음과 같은 소주제들이 발표되었다.

- (1) 임채웅(법무법인 태평양), 여행계약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결례의 비판적 검토"
- (2) 박영목(순천대학교), "미국 판례를 통해 본 예술품 중개회사의 책임"

8. 제2015-2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판례연구회 학술대회

2015. 10. 2. 충북대학교에서 개최된 <제2015-2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판례연구회 학술대회>는 다음과 같은 소주제들이 발표되었다.

- (1) 최난설현(연세대학교),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최근 EU 사법재판소의 판례 동향 - ECJ 15 January 2015, Birutė Šiba v Arūnas Devėnas, ECJ 23 April 2015, Jean-Claude Van Hove v CNP Assurances SA 등을 중심으로"
- (2) 이제우(사법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제공자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대상판결: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다43994, 44003 판결)"
- (3) 이종구(충북대학교), "품질보증과 관련한 최근 판례의 동향 및 시사점"

9. 제2015-1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해외법제연구회 학술대회

2015. 7. 24. 국민대학교에서 개최된 <제2015-1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해외법제연구회 학술대회>는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에 따른 유럽소비자법제의 최근 동향”이라는 대주제 아래 다음과 같은 소주제들이 발표되었다.

- (1) 최난설헌(연세대학교), “유럽연합(EU)의 소비자권리지침(Directive 2011/83)이 영국 소비자 법제에 미친 영향”
- (2) 김미혜(아주대학교),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에 따라 개정된 소비자철회권 조항 - 영국의 소비자계약규칙을 중심으로-”
- (3) 서종희(국민대학교),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에 의해 개정된 상상보증(Beschaffenheitsgarantie)에 관한 조항- 개정된 독일민법 제443조를 중심으로-”

10. 제2015-2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해외법제연구회 학술대회

2015. 7. 24. 국민대학교에서 개최된 <제2015-2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해외법제연구회 학술대회>는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에 따른 유럽소비자법제의 최근 동향 II”라는 대주제 아래 다음과 같은 소주제들이 발표되었다.

- (1) 김중길(영남대학교), “소비자철회권의 행사(독일민법 제355조 이하)”
- (2) 성중모(서울시립대학교), “소비자계약법의 적용범위와 제반 원칙(독일민법 제312조, 제312조의a)”
- (3) 성준호(가천대학교), “결합계약(독일민법 제358조-제360조)에서의 소비자철회권”
- (4) 이병준(한국외국어대학교), “전자거래의 개정 내용(독일민법 제312조의i, 제312조의j)”

11. 기타 주요 학술대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대회)

2015. 9. 18.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대회>는 “약관의 불공정성 통제에 관한 최근 동향과 과제”라는 대주제 아래 다음과 같은 소주제들이 발표되었다.²⁾

- (1) 김성욱(제주대학교), “약관의 내용통제 및 해석과 관련한 법적 문제”
- (2) 이병준(한국외국어대학교), “의외조항 내지 기습조항의 법률적 취급”
- (3) 박신욱(경남대학교), “약관에 의한 계약의 간접효력에 관한 연구”
- (4) 김진우(한국외국어대학교), “약관조항의 불편입 및 무효와 그 보충”
- (5) 서희석(부산대학교), “약관 관련 규정의 민법 내 편입에 관한 일본민법 개정안 연구”
- (6) 정구태(조선대학교),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에서의 항공권 초과예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나24544 판결-”
- (7) 정소민(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 신용과 불공정성 통제”
- (8) 오인영(법률사무소 해담), “소비자단체소송을 통한 약관의 내용통제”

12. 기타 주요 학술대회(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시아법센터 학술대회)

2) 법과대학 학술대회에서 “약관의 불공정성 통제에 관한 최근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도있는 토론의 장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2015. 11. 26. 건국대학교에서 개최된 <건국대학교 아시아법센터 2015년 국내학술대회>는 “아시아 법의 현황과 과제”라는 대주제 아래 소비자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소주제들이 발표되었다.

- (1) 최병규(건국대학교), “아시아 보험법상의 고지의무”
- (2) 서희석(부산대학교), “한중일 소비자계약법의 비교법적 고찰”

13. 기타 주요 학술대회(한국민사법학회 산하 EU계약법연구회 학술대회)

2015. 10. 31.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개최된 <EU계약법연구회 학술대회>는 “유럽사법통합의 최근 동향에 관한 고찰”이라는 대주제 아래 소비자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소주제들이 발표되었다.

- (1) 박희호(한국외국어대학교), “CESL을 통해서 본 디지털콘텐츠거래의 규율방향에 관한 연구”
- (2) 가정준(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무”
- (3) 위계찬(한양대학교),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의무”

Ⅲ. 약 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 약관에 의한 계약은 실무적으로 분쟁이 잦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소비자법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주제의 하나이다. 2015년에는 약관의 설명의무(III.1.), 약관의 해석(III.2.),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약관의 내용통제)에 대한 검토(III.3.), 그리고 국제사법과 약관규제법적용여부(III.4.)를 검토한 논문이 주를 이루었다.

1. 약관의 설명의무

사업자는 대량의 집단거래를 통일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약관을 작성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 방대하고 상세한 약관을 모두 읽고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약관규제법에서 사업자에게 중요한 내용만이라도 명시하고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약관규제법 제3조), 그 위반시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계약을 구현하여 소비자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³⁾ 이는 상대방인 고객이 알 수 없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

3) 김대규, “약관편입통제 조항의 기능성 연구”, 비교사법 제11권 1호, 259면.

어 고객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다룬 2015년 논문은 다음과 같다.

- (1) 박세민, “보험자 설명의무 및 약관설명 의무의 내용분석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8권 제1호, 2015.3, 27면 이하.
- (2) 박세민,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영국, 독일 및 유럽보험계약법 준칙의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 우리 상법상의 약관설명 의무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 안암법학 제47호, 2015.5, 143면 이하.
- (3) 최문희,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민사판례연구 제37권, 2015. 2, 703면 이하.⁵⁾
- (4) 김경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설명의무의 객관적·주관적 성립 범위”, 민사판례연구 제37권, 2015. 2, 1231면 이하.
- (5) 장덕조/남하균, “기왕증감액약관-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판결-”, 금융법연구 제12권 제12호, 2015.8, 183면 이하.⁶⁾

2. 약관의 편입 및 해석통제

약관해석은 법률의 해석이 아닌 법률행위 해석을 의미하는데, 약관규제법은 해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원칙[객관적·통일적 해석(동일성유지)의 원칙(약관규제법 제5조 1항 후단), 신의성실의 원칙(약관규제법 제5조 1항 전단),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약관규제법 제5조 2항),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약관규제법 제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약관이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는데, 이는 통상 ‘약관의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불린다. 그 규정은 의사표시 해석에서의 ‘주관적 해석’의 일반적 원칙에 대하여 특별히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⁷⁾ 따라서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⁸⁾ 2015년에는 주로 보험상

4) 대법원 1999.09.07. 선고 98다19240 판결

5) 학설 중 일부견해(김두진, KIKO 통화옵션조항의 공정성 통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여부를 중심으로-, 금융법학 제2호(2009); 정상근, 장외 통화옵션상품(KIKO)과 약관규제, 경제법연구 제8권 제1호(2009); 서완석, KIKO 분쟁에 있어서 판례의 동향과 자본시장법상의 쟁점, 상사판례연구 제23권 1호(2010); 전경근, 키코(KIKO) 거래의 법률관계, (이화여대) 법학논집 제14권 4호(2010) 등)는 KIKO 통화옵션계약이 약관에 의한 계약이라고 보지만,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53690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들은, KIKO 통화옵션계약의 구조는 다른 장외파생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은행이 고객의 필요에 따라 구조나 조건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하기 편하도록 표준화하여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일 뿐, 그 구조만으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거기에 개별적 교섭에 의해서 결정된 계약금액, 행사환율, 녹인·녹아웃 환율, 레버리지, 계약기간 등 구체적 계약 조건들이 결부됨으로써 비로소 전체 계약의 내용으로 완결되는 것이므로, 그 구조 자체는 따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처럼 KIKO 통화옵션계약의 계약구조를 약관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구조가 약관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6)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갑 보험회사와 을이 체결한 상해보험의 특별약관에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의 동일 신체 부위에 또다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위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7) 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창수 대법관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품의 면책약관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었다.

- (1) 박설아, “약관에서 불명확조항의 해석- ‘고객 유리의 해석 원칙’을 중심으로 -” 법조 제64권 제11호, 2015.1, 167면 이하
- (2) 김진우, “약관의 편입통제”,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3호, 2015.1, 321면 이하.
- (3) 김성욱, “약관의 내용통제 및 해석과 관련한 법적 문제”, 외법논집 제39권 제4호, 2015.11, 87면 이하
- (4) 권영준, “자살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7. 선고 2015나14876 판결의 평석 -”, 재산법연구 제32권 제3호, 2015.11, 207면 이하⁹⁾

3. 약관의 내용통제

약관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공정성을 잃어 무효가 된다(약관규제법 제6조 이하). 요컨대 약관규제법은 내용통제를 통해서 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¹⁰⁾ 다만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지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 (1) 박신욱, “시장관계에서의 약관의 효력 및 가격결정에 대한 내용통제 가능성에 대한 연구”, 외법논집 제39권 제4호, 2015.11, 1면 이하
- (2) 김진우, “약관조항의 불편입 및 무효와 그 보충”, 외법논집 제39권 제4호, 2015.11, 39면 이하

특히 대법원 2014.09.04. 선고 2012다204808 판결에서는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조항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

8) 대법원 1996.6.25. 선고 96다12009 판결.

9) 이 논문에서 필자는 고객유리의 원칙은 모든 해석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합리적인 해석이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보충적인 위험부담 원칙으로 이해한다. 이를 전제로 필자는 하나의 합리적인 해석방법이 도출된다면 고객유리의 해석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10) 이는 전통적·형식적 사적 자치와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즉 사적 자치는 자기결정과 그에 기한 자기책임 원칙으로 하는데, 일응 자기책임과 자기결정에 의하여 계약에 편입된 약관이 무슨 까닭으로 후발적인 공정성 심사를 받는가 하는 점이 의문인 것이다. 이러한 약관통제의 실제적 정당화사유는 약관통제에 관한 의문이 발생한 경우에 목적론적 해석을 수단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김진우, “2014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소비자법연구 제1권 제1호, 2015.8, 141면.

이다(밑줄은 필자가 첨가).”라고 하여,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종목에서 안전띠 미착용감액약관조항을 무효로 보았다. 이와 관련된 2015년 논문은 다음과 같다.

- (1) 이경재,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종목에서 안전띠 미착용감액약관조항 무효판결에 대한 연구—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 ” 법학논총 제35권 제2호, 2015.8, 421면 이하
- (2) 이성남, “자동차보험 면책약관 규정에 대한 내용통제 및 급부조정의 법리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8권 제3호, 2015.9, 193면 이하
- (3) 이규만, “자기신체사고담보의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감액약관의 효력인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평석-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5.3, 127면 이하
- (4) 김춘수, “자기신체사고보험에서의 안전띠 미착용 감액약관의 효력”, 민사재판의 제문제 23권, 2015.8, 754면 이하

또한 대법원은 수정해석의 일환으로 면책약관에 대한 효력유지적 축소해석(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¹¹⁾을 통해 약관의 무효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였고, 이에 대한 평석은 다음과 같다.

- (1) 김진우, “금융거래에서의 약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민사판례연구 37권, 2015, 1085면 이하.
- (2) 한삼인, “2014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제448호, 2015/3, 45면 이하

마지막으로 대법원 2015.06.23. 선고 2015다5378 판결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11)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 3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 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 작성자는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며, 보통거래약관의 작성의 아무리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수정해석은 조항 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 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부분을 추출배제하여 잔존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경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손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밀줄은 필자가 첨가).”고 보아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면책조항을 유효로 보았다. 이와 관련된 2015년 논문은 다음과 같다.

- (1) 조규성,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효력에 관한 판례 고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 법학연구 제56권 제4호, 2015.11, 193면 이하
- (2) 박세민, “생명보험약관의 자살부책(負責)조항에서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과 관련된 해석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제76호, 2015.3, 353면 이하
- (3) 최병규, “상해사망보험금지급과 심신상실 면책약관의 유효여부”, 기업법연구 제29권 제3호, 2015.9, 149면 이하
- (4) 최순진/서완석,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서의 자살과자살 부책 약관에 대한 검토”, 가천법학 제8권 제4호, 2015.12, 173면 이하

4. 국제사법과 약관규제법

대법원 2015.03.20. 선고 2012다118846 판결은 “국제사법 제27조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소비자계약에 관한 강행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는 점이나 약관규제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당연히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등 참조)”고 하여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2015년 이에 대한 평석 및 관련 논문은 다음과 같다.

- (1) 석광현, “영국법이 준거법인 한국 회사들 간의 선박보험계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대상판결: 대판 2015. 3. 20., 2012다118846(본소), 2012다118853(반소) -”, 저스티스 제149호, 2015.8, 196면 이하
- (2) 황현영, “해상보험에서 담보특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본소), 2012다118853(반소)판결 -”, 한양법학 제26권 제4호, 2015.12, 323면 이하
- (3) 정구태,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에서의 오버부킹과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외법논집 제39권 제4호, 2015.11, 19면 이하
- (4) 이병화, “국제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국제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2015, 337면 이하
- (5) 김현수,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계약과 분쟁해결”,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 191면 이하

2015년에는 앞의 주제 외에도 약관에 관한 다양한 법률문제들이 연구되었다.

- (1) 박세민, “통상손해로서의 대차료(렌트카 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과 그 해석에 대한 개선방향 연구”, 보험법연구 제9권 제2호, 2015.12, 229면 이하
- (2) 조규성, “자동차사고시 부상자에 대한 치료관계비 지급문제와 관련된 약관해석과 개선방안 고찰”, 동아법학 제67호, 2015.5, 301면 이하
- (3) 구재균,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50집, 2015.5, 181면 이하
- (4) 김대석/정현수, “승마장이용 관련 표준약관 도입에 관한 소고”, 아주법학 제9권 제2호, 2015.8, 99면 이하
- (5) 양덕순,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의 관련 현행법에 의한 통제 가능성에 대한 소고”,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1권 제2호, 2015.6, 169면 이하
- (6) 박연준, “연안여객선 운송약관의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2호, 2015.11, 109면 이하
- (7) 고희석,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관한 연구”, 입법과 정책 제7권 제1호, 2015.6, 459면 이하
- (8) 서희석, “일본에서 약관법의 민법전 신설 논의”, 외법논집 제39권 제4호, 2015.11, 59면 이하
- (9) 최병규, “약관규제법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한 연구-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39909 판결 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경제법연구 제14권 제1호, 2015.4, 27면 이하
- (10) 최병규, “약관과 소비자보호의 쟁점 연구”, 경제법연구 제14권 제2호, 2015.8, 241면 이하
- (11) 황태희, “약관 개정의 불공정성 판단에 대한 약관법과 공정거래법 적용의 관계”, 서울법학 제22권 제3호, 2015.2, 661면 이하
- (12) 박설아, “최근 미국에서의 약관에 관한 논쟁 검토 - 래딘의 「Boilerplate」 와 그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경쟁법연구 제32호, 2015.11, 451면 이하

IV. 제조물책임

2000년에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은 개정 없이 15여 년 동안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제정 이후 한미 FTA가 비준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1년에는 한-EU FTA가 잠정발효되는 등 점점 더 전세계와의 자유무역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제조물책임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재조명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회제도 및 사회의 운영체제는 그 시대의 시대정신(Zeistgeist)과 과학적인 패러다임(paradigm)을 반영하여야만 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무인항공기 및 무인자동차가 상용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제조물책임법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가?

제조물책임법의 입법과정에서도 산업계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보호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즉 결함의 개념정의, 증명책임의 부담주체의 결정, 제조물의 범위확정, 제조업자의 면책사유의 범위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 의견이 반영되어 현재의 제조물책임법이 완성되었다. 이미 이 법은 관련된 기관과 기구의 정비, 관

런 법령의 제정, 제조물책임보험의 활성화 및 제조업계의 제품안전성 의식의 확대 등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여 년 동안 이 법을 직접적 근거로 한 법원의 판결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분쟁의 현장에서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자 보호라는 입법목적에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자보호에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보다 피해자 친화적으로 법을 개정하여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¹²⁾ 최근 대법원 2015.3.26. 선고 2012다4824 판결은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인데,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여기서 제외된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는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되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밀줄은 필자가 첨가).”고 보아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은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로 보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이하 제조물책임에 관한 2015년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김종현, “독일법상 유전자변형 작물 재배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9권 제1호, 2015.12, 50면 이하
 - (2) 박진영/이두갑, “한국 담배소송에서의 위험과 책임: 역학과 후기 근대적 인과”, 과학기술학연구 제15권 제2호, 2015.12, 229면 이하
 - (3) 김선이/최병철, “무인항공기 사고로 인한 운영자의 법적 책임 연구”, 법학연구 제44호, 2015.5, 237면 이하
 - (4) 변용완, “지능형교통시스템과 민사법적 관계”, 중앙법학 제17권 제3호, 2015.10, 149면 이하
 - (5) 최경진, “지능형 신기술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정보법학 제19권 제3호, 2015.12, 203면 이하
 - (6) 김선이, “무인항공기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 연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1호, 2015.6, 151면 이하
 - (7) 이소은, “담배소송의 제조물책임 관련 쟁점에 대한 고찰 - 결함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제150호, 2015.10, 298면 이하
 - (8) 김민동,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제조물책임법의 비교연구- 제품안전규제법규와의 조정과 통합 -”,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5.3, 95면 이하
 - (9) 윤혜진, “제조물 엄격 책임의 정당성”, 철학연구 제135호, 2015.8, 321면 이하
 - (10) 가정준, “‘제조물’ v.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위한 비교·검토”, 재산법연구 제32권 제2호, 2015.8, 237면 이하
 - (11) 정병조, “제조물 결함의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연구- 하급심 판결의 분석을 포함하여 -”,
- 1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계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피하고자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노력에 의하여 결함의 발생빈도가 떨어진 결과 소송사건의 수 역시 적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피해자가 보다 용이하게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조물책임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법규정의 내용이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적절함을 넘은 과도한 친소비자적 제조물책임법으로 인하여 소위 블랙컨슈머들의 불법적 보상요구행위를 정당화하고 조장하여 그를 보호하는 결과를 야기해서는 안된다. 이는 건전한 산업경제활동을 저해하고 블랙컨슈머의 부당한 손해배상청구의 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시키는 등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 제64권 제5호, 2015.5, 134면 이하

(12) 이상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결합과 제조물책임 적용에 관한 고찰”, 법학논문집 제39권 제2호, 2015.8, 71면 이하

(13) 봉영준, “경구피임약 포장결함에 의한 제약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법학논총 제32권 제2호, 2015.6, 181면 이하

(14) 김석철, “식품사고 클레임에 대한 법률적 책임 고찰”, 무역학회지 제40권 제3호, 2015.6, 49면 이하

(15) 이은영, “한국소비자법 35년, 회고와 과제”, 저스티스 제146호, 2015.2, 467면 이하

V. 개인정보보호

빅데이터·사물인터넷 시대의 온라인 마케팅이 일반화 되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의 법적인 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보화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문제는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법적 쟁점의 하나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형사적 제재 및 민사상 법정손해배상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2015년 발표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02.12. 선고 2013다43994 판결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9. 23. 행정안전부령 제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밑줄은 필자가 첨가).”고 보았다. 더 나아가 대상판결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자로 하여금 이용약관 등을 통해 개인정보 등 회원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수집하였다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위와 같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이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밑줄은 필자가 첨가).”고 보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¹³⁾

(1) 김상찬/강재정, “빅데이터 시대의 온라인 마케팅과 개인정보 보호” 법과정책 제21권 제1호, 2015.3, 97면 이하

(2) 홍석한, “미국의 사물인터넷 발전과 법적 대응—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2015.9, 331면 이하

(3) 이병준/김건호,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 소개 - 소위 ‘육선판결’을 중심으로 -”, 주간기술동향 통권 1693호, 2015, 13면 이하

(4) 이제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다43994, 44003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2015.12, 557면 이하

(5) 강정희, “온라인 서비스 시장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법 집행 - 소비자 선택(Consumer Choice) 패러다임의 적용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31호, 2015.5, 306면 이하

13) 선행연구로 이동진,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의 법정손해배상”, 법학 제55권 제4호, 2014 참조.

- (6) 문병순, “핀테크의 동향과 과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 은행법연구 제8권 제1호, 2015.5, 29면 이하
- (7) 이대회, “사물인터넷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경영법률 제25권 제3호, 2015.4, 365면 이하
- (8) 이대회,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통지와 동의의 원칙을 중심으로 -”, 정보법학 제19권 제2호, 2015.8, 127면 이하
- (9) 오일석,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가능한 “손해”에 대한 고찰”, 법학논집 제19권 제3호, 2015.3, 1면 이하
- (10) 최민용, “법원의 업무와 개인정보 보호-미국의 SSN 보호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2권 제3호, 2015.12, 369면 이하
- (11) 이인호,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해석론 - 익명화한 처방전 정보를 중심으로 -”, 정보법학 제19권 제1호, 2015.4, 59면 이하
- (12) 이종구, “전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및 3배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법상의 3배 배상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 경영법률 제26권 제1호, 2015.10, 447면 이하
- (13) 장인호, “첨단과학기술시대에 RFID기술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인 대응방안”, 성균관법학 제27권 제1호, 2015.3, 1면 이하
- (14) 정준현, “방송과 통신기술간의 융합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문제”, 한양법학 제26권 제4호, 2015.12, 29면 이하
- (15) 정완, “고도 인터넷환경 하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50권 제2호, 2015.6, 213면 이하
- (16) 김성은/오정용, “일본의 변호법 시행을 둘러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와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1호, 2015.4, 61면 이하
- (17) 이우권, “사물인터넷(IoT)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이슈와 대안”,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4호, 2015.12, 215면 이하
- (18) 권현영,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 토지공법연구 제71호, 2015.8, 297면 이하
- (19) 최경진, “사이버안보와 개인정보보호법령의 상관성”, 가천법학 제8권 제4호, 2015.12, 201면 이하
- (20) 심우민, “사물인터넷 개인정보보호의 입법정책”, 헌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2015.6, 1면 이하
- (21) 임정숙, “독일법상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의와 그 시사점”, 경제법연구 제14권 제1호, 2015.4, 171면 이하
- (22) 김봉수,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감독체계”, 법과정책 제21권 제3호, 2015.12, 61면 이하
- (23) 김봉수,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감독기구에 대한 고찰- 미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 경영법률 제26권 제1호, 2015.10, 487면 이하
- (24) 김지영,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물인터넷의 법적 규율에 관한 고찰”, 법과정책연구 제15권 제4호, 2015.12, 1451면 이하
- (25) 이재심/문재태, “개인정보보호제도상의 규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연구 제58호, 2015.6, 39면 이하
- (26) 이성대, “개인정보보호법제상 동의의 법리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제27권 제1호, 2015.3, 135면 이하

- (27) 장진숙, “정보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에 관한 논의: 잊혀질 권리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제48호, 2015.4, 167면 이하
- (28) 정찬모,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5.3, 61면 이하
- (29) 김일환, “목적구속원칙과 목적 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비판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수사목적 중심적으로 -”, 성균관법학 제27권 제2호, 2015.6, 1면 이하
- (30) 김종호,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개인정보보호기관의 법적 실태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45호, 2015.9, 261면 이하
- (31) 김후신, “개인정보보호법상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그리고 비식별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의 평가 및 입법론적 논의 -” 법경제학연구 제12권 제3호, 2015.12, 443면 이하
- (32) 심영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정책의 과제- 「개인정보 보호법」 상 형사법적 규제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2015.4, 37면 이하
- (33) 정남철, “個人情報保護法制의 法的 問題點 및 改善課題- 특히 改正 個人情報保護法에 대한 批判을 檢하여 -”, 법조 제64권 제1호, 2015.1, 136면 이하
- (34) 강정희, “온라인 서비스 시장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법 집행 -소비자 선택(Consumer Choice) 패러다임의 적용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31권, 2015, 306면 이하
- (35) 최은진, “빅 데이터(Big Data) 시대의 소비자보호 문제 -소비자 개인정보의 범위와 정보주체 동의를 중심으로-”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제7권 제1호, 2015, 71면 이하

VI. 금융소비자

상품소비자와 대응하여 최근에는 금융소비자보호 또한 중요한 테제로 다루어 지고있다. 이를 반영하여 2012. 5. 15.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신설되었다.¹⁴⁾ 금융소비자와 관련하여 2015년에 발표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¹⁵⁾

- (1) 맹수석,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과 법적 쟁점-최근 금융감독체제의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5.3, 283면 이하
- (2) 한상만/최아영, “금융소비자의 온라인 정보탐색에 관한 연구: 누가 금융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는가?” 소비자학연구 제25권 제3호, 2015.6, 135면 이하
- (3) 백은영/고화정, “금융소비자 유형화 및 유형별 포트폴리오 분석”, 소비자학연구 제26권 제6호, 2015.12, 207면 이하
- (4) 노철우,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5.4, 3면 이하
- (5) 백은영, “Mixture Model을 활용한 중고령 금융소비자 유형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8권 제1호, 2015.2, 53면 이하
- (6) 권세훈, “연대보증제도 폐지와 금융소비자 후생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3

14) 이는 2011. 9. 국무총리실에서 권고한 금융감독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감독과 검사 업무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분리하면서 창설한 기관이다.

15)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김진우, “2014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143면 각주 16 참조.

호, 2015.12, 1면 이하

(7) 박도현/조홍중,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본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신용의 중요성”, 유라시아연구 제12권 제4호, 2015.12, 1면 이하

(8) 이견범/이후록, “지급결제서비스의 변화와 정책방향—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 경제발전연구 제21권 제4호, 2015.12, 99면 이하

(9) 정순섭, “금융감독체계의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 이원화모델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제37권, 2015.2, 1043면 이하

(10) 박정국, “중국의 보험소비자권익보호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논고 제51집, 2015.8, 127면 이하

(11) 김소연/장서희, “소비자보호를 위한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법적 규제 개선 방안”,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1권 제2호, 2015.6, 33면 이하

(12) 고동원,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법제도적 개선 과제”, 성균관법학 제27권 제1호, 2015.3, 215면 이하

(13) 김진, “서울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비자의 금융조건 선택”, 부동산학연구 제21권 제2호, 2015.6, 41면 이하

(14) 김현수/정세창/김은경, “부당승환계약 방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외법논집 제39권 제3호, 2015, 117면 이하

(15) 윤정혜/김지혜/염선화, “금융소비자보호 법과 제도 :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사례 분석”,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 227면 이하

(16) 오종윤, “금융소비자의 성향과 태도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상품자문업)과 관련하여 재무설계에 입각한 금융상품선택프로세스”,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 103면 이하

(17) 맹수석, “핀테크산업에 있어서 금융소비자보호의 법적 과제”, 금융소비자연구 제5권 제1호, 2015, 65면 이하

VII. 소비자법 관련 연구보고서 및 서적

2015년 출간된 소비자법 관련 서적은 다음과 같다.

(1) 이은영 외, 전자상거래의 다변화와 소비자 보호(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총서 4), 세창출판사, 2015.9.

(2) 이호영, 소비자 보호법(제3판), 홍문사, 2015.8.

(3) 강혜경, 멋진 한국인이 카페에서 읽는 친절한 소비자법과 정책, 신정, 2015.7.

(4) 한국소비자원 편집부,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2014), 한국소비자원, 2015.5.

(5) 고희석, 디지털콘텐츠거래와 소비자보호법, 선문대학교 출판부, 2015.2.

(6) 김영신 외, 소비자와 함께하는 소비자법과 정책, 교문사, 2015.2.

(7) 한국산업정보원 편집부, 전국소비자연감(2015), 한국산업정보원, 2015.02.

(8) 이금노, 소비자권익 관점의 약관규제 개선방안연구(정책연구 14-22), 한국소비자원, 2015.1.

(9) 오시영, 미국법상의 대표당사자소송, 법률저널, 2015.8.

- (10) 오시정, 여신거래계약의 이론과 실무: 소비자금융 편, 한국금융법연구원, 2015.6.
- (11) 손진화, 전자상거래법(3판), 신조사, 2016.1.
- (12) 가정준 역,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 비계약편: DCFR 제5권~제10권 (비교민법총서 4), 2015.4.
- (13) 함인석 역, 유럽정보보호법,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5.10.
- (14) 민병조 외, 금융소비자보호(2판), 한국금융연수원, 2015.3.

VIII. 기 타

그밖에 2015년 학계에서는 소비자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극히 다양한 주제들이 연구되었다.

1. 드론이 상용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 등을 검토하고 있는 2015년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다.

- (1) 박창석, “무인항공기와 사생활의 자유— 무인기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구축 시론 —”, 공법연구 제43권 제3호, 2015.2, 281면 이하
- (2) 신승균, “무인항공기 활용에 따른 법제도적 쟁점사항 검토”,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4권 제3호, 2015.8, 49면 이하
- (3) 박신욱, “무인항공기에 의한 소유권 및 사생활”, 민사법학 제70호, 2015.3, 413면 이하

2. 법률서비스 소비자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07.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 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 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인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밑줄은 필자가 첨가).”고 보았다. 이에 대한 평석은 다수존재한다.

- (1) 윤진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판결의 장래효에 대한 의문”, 법률신문 연구논단, 2015. 8. 6.
- (2) 장윤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 동아법학 제69호, 2015, 297면 이하
- (3) 김자영/백경희,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 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 서울법학 제23권 제2호, 2015.11, 69면 이하
- (4) 정상현, “형사성공보수약정에 대한 반사회적 무효판결 관건”, 성균관법학 제27권 제4호, 2015.12, 93면 이하
- (5) 이진기, “사적자치의 실현을 위한 민법의 과제”, 인권과 정의 제454호, 2015.12, 92면 이하
- (6) 하정철, “국가기관과 변호사간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모색”, 법학연구 제18

권 제4호, 2015.12, 83면 이하

3.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인구절벽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이에 고령화사회의 고령소비자와 관련된 법적쟁점을 다룬 논문이 주기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2015년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다.

- (1) 김현수, “고령자의 신상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법제 9권, 2015, 1면 이하
- (2) 김재영, “소비자안전의 관점에서 본 고령운전자 이슈”, 월간소비자정책동향 제65호, 2015, 45면 이하
- (3) 윤석찬, “원격의료의 법리와 실현”, 재산법연구 제32권 제3호, 2015, 275면 이하

4.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15.07.23. 선고 2012다15336 판결에서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는데,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이 이전될 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수인이 당연히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허위·과장광고를 그대로 믿고 허위·과장광고로 높아진 가격에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는 등으로 양수인이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양수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밀줄은 필자가 첨가).”고 보았다.¹⁶⁾ 광고법상의 책임과 관련된 2015년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다.

- (1) 박성용/오동현, “광고매체로서 인터넷포털사업자의 광고법상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1호, 2015, 69면 이하
- (2) 김진우, “EU 소비자권리지침에서의 소비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의무 - 우리 소비자에게 약법의 개정방향을 모색하며 -”,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2015.11, 631면 이하
- (3) 유대중, “검색광고와 표시광고법과의 관계 -검색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19권 제2호, 2015.8, 159면 이하
- (4) 정진명,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8, 207면 이하
- (5) 박수영, “블로그 광고에 대한 규제 -경제적 이해관계 미공개 경우를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32호, 2015.11, 355면 이하
- (6) 박은경, “중국 개정 「消費者權益保護法」상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중국법연구 제24집, 2015.11, 1면 이하

16) 대상판결은 또한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는 수분양권의 실제 가격과 허위·과장광고가 없었을 경우 수분양권의 적정한 가격의 차액인데, 수분양자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분양계약이 해제로 소멸하여 소멸하게 되면 해제의 효과로서 당시까지 납입하였던 분양대금에 대하여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향후의 분양대금 지급채무는 소멸하게 되므로,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차액 상당의 손해도 없어지게 된다.”고 보았다.

5. 기타 소비자법 및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 (1) 김도년, “소비자관련 입법 동향”, 월간소비자정책동향 제59호, 2015, 2면 이하
- (2) 이병준, “한국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규율대상의 현황과 과제”, 외법논집 제39권 제4호, 2015, 159면 이하
- (3) 이창재, “EU법상 항공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49집, 2015, 415면 이하
- (4) 김중길, “EU소비자계약법상 철회권에 관한 비교연구”, 비교사법 제22권 제2호, 2015, 595면 이하
- (5) 전병남,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의료법학 제16권 제1호, 2015, 255면 이하
- (6) 김은경, “소비자계약적 관점에서의 유럽보험계약법 원칙의 현대적 의미”, 경제법연구 제14권 제1호, 2015, 77면 이하
- (7) 고희석, “소비자법상 양벌규정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양벌규정을 중심으로-”, 법조 제64권 제11호, 2015, 235면 이하
- (8) 이은영, “전자상거래의 다변화에 따른 소비자법의 쟁점”, 법학논총 제32권 제2호, 209면 이하
- (9) 고희석, “체육시설이용계약과 소비자보호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관한 규율을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제18권 제2호, 2015, 121면 이하
- (10) 김소연/장서희, “소비자보호를 위한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법적 규제 개선 방안”,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1권 제2호, 2015, 33면 이하
- (11) 서정남, “【호주】 2015년 호주소비자법 규제집행 우선순위 발표”, 월간소비자정책동향 제59호, 2015, 14면 이하
- (12) 김진우, “소비자권리지침의 주요개념 및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서울법학 제23권 제2호, 2015, 105면 이하
- (13) 박희호, “유럽공동매매법(CESL)을 통해서 본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규율방향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39권 제4호, 2015, 117면 이하
- (14) 알리호센예하, “소비자에 대한 온라인 전자 서명”,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2015, 995면 이하
- (15) 임형택, “보통유럽매매법에서의 계약체결상의 정보제공의무”, 법학연구 제59호, 117면 이하
- (16) 박희호, “유럽공동매매법(CESL)의 계약합치성에 관한 연구 - CISG 및 DCFR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2호, 2015, 417면 이하
- (17) 김응규/김민우,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적 이해와 법정책의 방향”, 서울법학 제23권 제1호, 2015, 355면 이하
- (18) 박정국, “중국의 보험소비자권익보호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논고 제51집, 2015, 127면 이하
- (19) 陳志/조동제, “중국의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 배경 및 그 개선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제44호, 2015, 779면 이하
- (20) 박정국, “중국 보험소비자보호법제의 문제점, 개선방안 및 시사점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39권 제3호, 2015, 299면 이하

6. 방문판매 및 해외직구에 관한 2015년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다.

- (1) 강명수, “해외 직구의 법적 쟁점”, 유통법연구 제2권 제1호, 2015, 9면 이하
- (2) 양승혜, “해외 직거래상황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존 법제의 분석 및 대안검토”,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8권 제1호, 2015, 33면 이하
- (3) 고희석, “통신판매증개와 소비자보호”, 유통법연구 제2권 제2호, 2015, 107면 이하
- (4) 고희석, “후원방문판매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경제법연구 제14권 제2호, 2015, 115면 이하
- (5) 고희석, “방문판매법상 사법적 규율에 의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 강행규정성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1호, 2015, 245면 이하
- (6) 김진봉, “후원방문판매의 법적 쟁점”, 유통법연구 제2권 제2호, 2015, 71면 이하

IX. 2015년 소비자사법 연구의 전망 - 맺음말에 갈음하여 -

2016년에도 각 연구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소비자법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이 검토될 것이다. 한국 소비자법학회의 “정기학술대회” 및 산하의 “판례연구회”와 “해외법제연구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를 통해 좋은 주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2016년에 다음과 같은 주제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 EU 소비자권리지침(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nsumer rights)에 따른 유럽 각국의 소비자법 개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EU 소비자권리지침(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nsumer rights)은 2011년 10월 10일 EU 정상회의(the European Council)에서 채택되어 같은 해 12월 12일에 발효되었다. 소비자권리지침(Directive 2011/83/EU)의 제정으로 종전의 영업장소의 판매지침(Directive 97/7/EC Distance Selling)과 방문판매지침(Council Directive 85/577/ECC Doorstep Selling)이 폐지되었으며, 불공정계약에 관한 지침(Council Directive 93/13/EEC on Unfair Contract Terms)과 소비재매매 및 소비자보증에 관한 지침(Directive 1999/44/EC Sale for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이 소비자권리지침(Directive 2011/83/EU)으로 통합되었다. 소비자권리지침(Directive 2011/83/EU)은 EU 28개 회원국의 소비자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소비생활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EU의 장기적인 소비자정책(Consumer Policy Strategy)과 뜻을 같이한다. 즉 EU 소비자권리지침은 ‘소비자권리의 강화’, ‘소비자복리의 증진’ 및 ‘효과적인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EU의 장기적인 소비자정책을 잘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EU 회원국은 2013년 12월 13일까지 동 지침의 도입을 선언하여야 하며, 지침이 EU 공식저널(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게재된 날로부터 2년 내 즉, 2014. 6. 13.까지 자국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Article 28(2) Directive 2011/83/EU. 참고로 프랑스는 2014년 3월 17일에 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소비자법(Law no 2014-344)을 공포하였고, 2014. 10. 1.부터 발효되었

다. 영국은 '2013소비자계약규칙(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2013)'에 지침의 내용을 담아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2015. 10. 1.부터 '2015소비자권리법(Consumer Rights Act 2015)'이 발효되었다. 독일 또한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Directive 2011/83/EU)을 반영하여, 2013년 9월 20일에 개정¹⁷⁾되었다.

2. 여행계약

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민법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고, 거기서는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들이 신설되어(제674조의2 내지 제674조의9) 2016. 2. 4.부터 시행된다. 신설된 여행계약에 관한 민법규정들에 관한 해석론은 입법과정에서의 검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사법의 주요 연구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소비자법학회는 "여행계약"을 주제로 하여 2016.5.20.에 제28회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3. 영미법상의 class action 제도 등의 도입여부에 관한 논의

영미의 소비자법은 소비자거래 분야에서는 위법한 사업 활동에 의해 사업자가 이익을 취한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가 취득한 권리가 「부패한 권리」가 되지 않도록 ① 「class action」, ② 「명목적 손해배상」, ③ 「중첩적 손해배상」, ④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국내 소비자법에서도 이러한 제도 등에 대한 도입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소비자법, 약관, 개인정보보호, 금융소비자, 제조물책임

17) Gesetz zur Umsetzung der Verbraucherrechterichtlinie und zur Änderung des Gesetzes zur Regelung der Wohnungsvermittlung vom 20.09.2013, BGBl. 2013 I S. 3642; 이 법률에 대한 초안은 BT-Drucks. 17/12637, BT-Drucks. 17/13951 참조.

제3주제

2015년도 소비자법 관련
판례 회고

2015년도 소비자법 관련 판례 회고

이병준(한국의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며

2015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관련 법률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 숫자를 보면 소비자기본법 관련 판례 1개,¹⁾ 표시광고법을 적용한 판례 2개,²⁾ 그리고 약관규제법을 적용한 판례 5개³⁾이고 그밖에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을 적용한 판례는 없었다.⁴⁾

하지만 소비자 관련 판례의 영역을 넓혀 보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들이 상당히 보인다. 예컨대 대형마트규제와 관련된 대규모유통업법에 관한 판례, 변호사 성공보수와 관련된 판례 등이다. 본 평석에서는 이들 판례 중 법리적 또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다.

II. 변호사 형사성공보수의 적법성과 판결의 효력

2015년도에 선고된 판결 중에서 법조계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판결은 아마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제103조 위반으로 판단한 판결일 것이다.⁵⁾ 기존의 판례는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었는데,⁶⁾ 이러한 입장을 바꾼 것이다.

1. 대상판결 사안과 대법원의 판단내용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은 소비자는 변호사 수임계약을 체결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경우 관행적으로 사건보수로서 사건 수임 시에 선급금 조로 지급되는 '착수

1) 대법원 2015.2.12. 선고 2011다76617 판결.

2) 대법원 2015.07.23. 선고 2012다15336,15343,15350,15367,15374,15381,15398,15404 판결; 대법원 2015.05.28. 선고 2014다24327,24334,24341,24358,24365,24372 판결.

3) 대법원 2015.3.20. 선고 2012다118846,118853 판결; 대법원 2015.03.26. 선고 2014다229917 판결; 대법원 2015.05.28. 선고 2012다50087 판결; 대법원 2015.06.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대법원 2015.11.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4) 이는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종합법률정보에서 해당 법률을 키워드로 하였을 때 검색된 결과이다.

5)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 김자영·백경희,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 서울법학 제23권 제2호, 2015, 69면 이하; 장윤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 동아법학 제69호, 2015, 297면 이하; 이진기, 사적자치의 실현을 위한 민법의 과제, 인권과 정의 제454호, 2015, 92면 이하; 윤진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판결의 장래효에 대한 의문, 법률신문 연구논단, 2015. 8. 6.

6)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249 판결 등.

금'과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의 일종으로 사건이 종료한 후에 지급되는 '성공보수'를 지급하고 있다.⁷⁾

본 판결사례에서 원고는 아버지가 구속되자 변호사인 피고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석방되면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실제로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1억 원을 다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기존의 판례 입장을 원용하여 6000만 원을 초과하는 4000만 원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무효라고 하여, 4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대법원에서 본 판례 사례의 경우에는 아직 기존 관행대로 성공보수약정이 이루어졌고 여기에는 당연히 정상적인 보수까지도 성공보수의 방식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제103조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단지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더 나가서 이 판결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제103조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제103조 위반의 무효로 판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대법원이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이 제103조 위반이라는 결정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2. 성공보수약정의 제103조 위반 여부와 장래효

선량한 풍속 위반으로 제103조로 인한 무효판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해당 행위가 이러한 무효사유를 징표할 수도 있고 이러한 행위 자체가 전형적으로 제103조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첩계약은 그 실질을 따질 필요 없이 그 계약유형 자체가 위법한 유형에 속한다. 그에 반하여 도박계약의 경우에는 그 실질을 따져서 사행성이 현저한 경우에만 제103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입료를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누어 받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공보수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므로 기존의 판례는 구체적으로 성공보수약정이 이루어진 내용을 살펴서 무효로 보았었는데, 앞으로는 형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약정은 구체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모두 무효로 보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본 판결이 특이한 것은, 판결은 당해 사건의 판단을 위하여 내리는 것이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게 되면 당해사건을 포함하여 앞으로 선고될 사건에 적용된다.⁸⁾ 하지만 본 판결에서는 앞으로 이루지게 될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로 보겠다고

7) 성공보수의 의의와 기능 등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김자영·백경희, 서울법학 제23권 제2호, 74면 이하 참조.

8) 대법원 2005.07.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1]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의 변경은 관습상의 제도로써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규율되어 왔던 종중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바, 대법원이 이 판결에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하여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견해를 변경하는 것은 그동안 종중 구성원에 대한 우리 사회 일반의 인식 변화와 아울러 전제 법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는 종래의 관습법이 더 이상 우리 법질서가 지향하는 남녀평등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 법적 효력을 부정하게 된 데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변경된 견해를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종래 대법원판례를 신뢰하여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의 효력을 일시에 좌우하게 되고,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의 원리에도 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변경된 대법원의 견해는 이 판결 선고 이후의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성립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함이 상당하다.

[2] 대법원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이 가능한지의 여부 그리고 모든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에 대하여 제103조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현재 논란이 많다고 할 수 있다.

3. 본 판결의 의미

이처럼 본 판결은 이론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판결이다. 하지만 변호서비스를 받은 소비자로서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은 반가울 수 있다. 왜냐하면 본 판결이 지적하고 있듯이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바쁜 인식이 반영된 것이고 대법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나쁜 인식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성공보수가 재판에 영향력 있는 고위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아 무죄, 감형, 집행유예 등을 이끌어내고 그 대가로 고액의 성공보수를 받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으므로 이러한 '전관예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판결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모든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보게 되면 착수금이 높아지거나 이면계약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논의는 이미 오래되었다. 특히 1999년도에 대통령 자문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를 결의한 것을 시작으로 17, 18대 국회에서는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제출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이처럼 입법자인 국회와 당사자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나쁜 관행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대법원이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불신의 원인을 잘 못 파악한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정노력을 기울여서 변호사 보수체계를 바꾸어 실질적인 노력의 대가를 성공보수가 아닌 다른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변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Ⅲ.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위법성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다.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형마트 사이에 영업시간 제한을 둘러싼 소송이 지속적으로 벌어졌다.⁹⁾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이다(동법 제12조의2). 처분대상으로서 대형마트는 실제적 요건으로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갖추

된다.'고 종종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는 것은 결국 종래 관습법의 효력을 배제하여 당해 사건을 재판하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원고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종래 관습법의 효력을 다투면서 자신들이 피고 종회의 회원(종원)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변경된 견해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작용의 본질이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저히 정의에 반하게 되므로, 원고들이 피고 종회의 회원(종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한하여는 위와 같이 변경된 견해가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9)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여기서는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한 판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어야 하고, 절차적 요건으로 대형마트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동법 제8조 제1항, 별표 제1호).

1. 대상판결의 사안과 판결의 내용

피고 동대문구청장은 2012. 11. 14. 원고 롯데쇼핑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그들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정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 고등법원¹⁰⁾에서는 처분 대상이 된 점포들이 대형마트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즉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처분대상인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인데 롯데쇼핑 등 대규모 점포에서 점원이 구매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들에 비취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영업제한 처분 등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인 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실제로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주차공간·편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경쟁제한을 위한 수단으로 볼 여지도 크다”고 보아 조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¹¹⁾은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설 등록된 형식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일체로서 판단하여야 하고, 대규모점포를 구성하는 개별 점포의 실질이 위 대형마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다시 살필 것은 아니다”라는 법리를 실시한 후 피고들이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이상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입법자에게 부여된 입법 재량에 기한 것으로 ‘대형마트 등의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및 ‘대형마트 등과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등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경제규제에 관한 입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규제는 그 성질상 상대방인 대형마트 등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경제상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 중략 ... 그리고 이와 같은 규제의 효과는 단순히 처분상대방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 등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대형마트 등에 입점하여 임대매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농·공·상인들의 이해관계 및 대형마트를 상시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법리를 실시한 후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기초로 해서 보았을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¹²⁾

2. 소비자법적 관점에서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¹³⁾ 여기서는 소비자법의 관점에서 중요한 쟁

10)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3누29294 판결.

11)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12) 다수의견의 입장이다. 그에 반하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의 반대의견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에 대형마트의 매장 중 상품의 판매 장소 외에 이 사건 용역제공 장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3)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문헌으로 성중탁,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찬반양론을 지켜보며, 법률신문 판례평석, 2014. 1. 19.

점을 중심으로만 살펴보려고 한다.

1) 대형마트의 개념정의

본 판결과 관련하여 원심과 대법원의 시각차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형마트의 개념과 관련된 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반면, 대법원 이 쟁점을 피하고 일단 대형마트로 등록된 이상 이들을 대형마트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등록제도를 취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경우 대법원의 원칙적 판단은 맞다. 하지만 대형마트 개념과 관련하여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개념요소가 타당한지에 관한 분석은 있어야 했을 것이다.

원심판결에서도 드러나듯이 대형마트로 문제된 대규모점포에서는 채소·과일 코너 등에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점원이 제품의 양을 덜거나 계량하여 포장해주고 있고, 정육·생선·반찬 코너 등에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점원이 제품을 즉석에서 가공·손질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화장품·스포츠용품 코너 등에서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하여 점원이 제품의 적합성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공하고 있는 등의 영업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매장 내에 다수의 임대매장이 입점되어 있고, 그 중에는 병원, 미용실, 사진관, 식당 등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성격의 매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요건은 혼동을 야기하고 있으나, 이 요건은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¹⁴⁾과의 구분을 위하여 둔 요건표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표지를 '점원의 상당한 도움 없이' 혹은 '소비자의 셀프서비스 방식에 의해'로 이해하면 충분히 본 표지에 의해서 대형마트의 개념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¹⁵⁾ 원심판결은 너무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기계적으로만 법률규정을 해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대법원의 판단은 너무 형식적인 등록만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 기본권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본 판결이 소비자법적 관점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대법원은 본 판결에서 당사자의 이익을 형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선언하고 있다. 현행법상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고 헌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소비자운동에 관한 규정(제124조)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을 헌법상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¹⁶⁾ 본 판결을 통하여 소비자의 기본권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보았다. 그리고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영업시간 제한처분은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 시간대의 영업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한 달에 2일의 의무휴업만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4)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 제3호 관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재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15) 이러한 방식으로 법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이혁,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34권 제1호, 2015, 336면.

16)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이병준, 현대 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 집문당, 2013, 28면; 이성환, 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향 - 소비자보호법의 전면개편과 관련하여, 공법학연구 제6권 제1호, 2005, 313면 이하 참조.

IV. 인삼가공품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의 판단기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우리나라에 1991. 7. 1. 그 당시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도입되었다. 그 목적은 정부의 농산물 수입자유화계획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됨으로써 부정유통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¹⁷⁾ 그러나 원산지 표시제도가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산지를 속이거나 법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농산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¹⁸⁾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원산지표시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¹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²⁰⁾ 시정조치 등 행정적 제재가 문제될 수 있으나, 본 대상판결을 형사적 제재가 문제된 사안이다.

1. 대상판결의 사안과 판결의 내용

강화인삼협동조합(조합장 황○○)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인천 강화읍 강화인삼농협 제조공장에서 강화산 수삼과 국내 기타 지역산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서로 혼합한 홍삼과 꿀, 울리고당, 과정을 섞어 당침을 하는 방법으로 대략 시가 2억 7천만 원(소비자가 기준 5억 5천만 원) 상당의 '봉밀강화홍삼절편'을 만들었다. 제품 포장박스에 판매자는 '강화인삼농협', 박스 오른쪽 상단에는 '대한민국 특산품'이라고 기재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강화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성 기후로 ~ 중략 ~ 홍삼제조시 최상급인 천지삼 비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홍삼원료를 생산하는 6년근 인삼의 본고장으로 명성이 나게 된 것임" 등을 광고했다. 이에 검찰에서는 "강화인삼협동조합과 대표지인 황○○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²¹⁾

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원심²²⁾에서는 유죄인정을 하고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즉 "피고인들이 제품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재료가 전부 강화지역에서 채배되는 인삼인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으로서, 이는 농수산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

17)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동천,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홍익법학 제11권 제2호, 2010, 455면 이하 참조.
 18) 세계일보, "벌금 내도 몇배 남아...원산지 눈속임 '검은 유혹'", 2014. 9. 4.자
 기사(<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9/03/20140903004358.html>); 노컷뉴스, "농식품 원산지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2016. 2. 5.자 기사(<http://www.nocutnews.co.kr/news/4544461>).
 19)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다)목에서 '허위의 원산지의 표시'라고 함은 반드시 완성된 상품의 원산지만에 관한 것은 아니고, 거래통념에 비추어 상품 원료의 원산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중국산 대마 원사를 수입하여 안동에서 만든 삼베 수의제품에 "신토불이(신토불이)" 등의 표기를 한 것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이 수의가 안동에서 생산된 대마로 만든 삼베 수의인 것처럼 삼베 원사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례가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5033 판결). 이 사건은 부정경쟁방지법상 허위의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상품 원산지와 상품 원료의 원산지 허위 표시의 관계에 관하여 판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이러한 평석으로 이수완, "부정경쟁방지법상 허위의 원산지 표시", 대법원판례해설 41호, 2002, 415-416면).
 20) 미트 비즈니스저널, "전국한우협회, 원산지표시 위반 20개 업소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 2015. 10. 16.자 기사(<http://www.meatbusin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
 21) 사건 및 판결내용 소개는 법률신문, "홍삼 제조 때 그 지역 인삼 100% 사용 안해도", 2015. 4. 20.자 기사(<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543&kind=AA01>); 로이슈, "대법원 "타 지역 인삼 섞인 '강화홍삼절편' 원산지 표기 위반 아냐", 2015. 4. 19.자 기사(<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1>) 참조.
 22) 서울북부지법 2014. 10. 8. 선고 2014노763 판결.

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반하여 대법원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원심에 환송하였다.

대법원²³⁾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본 후 다음과 같은 법리를 기초로 판단하고 있다. 즉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그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라면 그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 그러한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또한 홍삼절편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조·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도 법령상 허용되고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서 위와 같이 인삼류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그 명칭·품질 등이 본질적으로 국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농산물로서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형벌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까지 더하여 본다면,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그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그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사실판단을 하고 있다.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품의 주원료인 홍삼의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적법하게 표시한 이상, 제품명과 판매자명에 ‘강화’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²⁴⁾ 할 것이다”.

2. 법령상 원산지 표시의무와 혼동우려의 행위 판단

원산지표시법에 의하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구체적으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동 부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6조 제3항). 그리고 동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에서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포맷·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는 큰 글씨로 ‘경기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경우를 실시하고 있다.²⁵⁾

한편 인삼산업법에서는 홍삼 등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연근 및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23)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14191 판결.

24) “또한 피고인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강화지역 홍삼의 우수성을 알리는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품의 원재료에 실제로 강화지역 수삼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광고 문구는 위 홍삼을 가공·판매하는 피고인 강화인삼협동조합이 자신의 지역 기반인 강화지역 홍삼의 일반적인 특징을 홍보하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더해진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25) 다만 위 시행규칙에서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어느 범위에서 지역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간한 ‘원산지 표시제 주요 문답 자료’에서는 “국내가공품에 지역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천 쌀과 같이 지역명과 농산물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천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강릉한과처럼 농산물 가공품을 그 지역에서 제조·가공하였다면 지역명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록 하고 있고 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는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그런데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에서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사용된 원료(물, 식품첨가물 및 당류는 제외한다)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별표 1]).

또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그리고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위한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은 자연환경적 및 인적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구획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하나의 대상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2조). 결국 인삼류의 경우에는 국내 특정 지역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아예 못하도록 하고 있다.

3. 대상판결의 분석

결국 관계법령을 기초로 한 대상판결의 법리를 분석하면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즉 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 및 지리적표시 등을 사용할 수 있고 ‘국산’과 함께 ‘지리적표시’ 등을 사용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지리적 표시와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였다면 원산지표시법상의 혼동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예컨대 소위 ‘횡성한우 사건’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한우 500여 마리를 횡성으로 가져와 일정기간 사육한 뒤 도축하여 원산지를 횡성으로 표기한 사건이었다. 현행법상 소고기의 경우 도출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해야 도축지를 표시할 수 있다는 전환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사건 당시에는 소고기 원산지 표시 기준이 생기기 전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²⁶⁾은 “토지에 부속된 식물 등 농산물이나 임산물은 수확이나 채취 이전에 원래 장소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식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수확 또는 채취장소를 원산지로 보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나, 이동이 가능한 가축의 고기는 출생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해 사육되거나 도축될 가능성이 있어 출생과 사육 또는 도축 중 어느 요소를 어느 정도로 고려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국내산 쇠고기에 특정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할 때 해당 소가 출생·사육·도축된 지역과 전혀 무관한 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하거나 출생·사육은 타 지역에서 이루어진 후 오로지 도축만을 위하여 도축지로 이동된 후 곧바로 도축되었을 뿐인데도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시하였다면” 이는 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및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²⁷⁾

26)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도3575 판결. 관련 평석으로 김강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와 죄형법정주의의 관계 - 횡성한우 사건, 대법원판례해설 제94호, 2012년 하, 법원도서관, 2012, 901면 이하 참조.

27) 다만 그 당시 아직 원산지전환에 규정이 없던 것을 감안하여 “범행 당시 원산지 표시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이상 국내산 소 도축을 위하여 출생지나 사육지로부터 특정 지역으로 이동시켰으나 이동과정에서 감소된 체중 회복이나 도축시기 조정 등의 이유로 이동 당일 도축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그 특정 지역에서 사료 등을 먹다가 도축한 경우, 이를 단순한 도축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사육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해당 소의 종류와 연령, 건강상태, 이동 후 도축 시까지 기간, 이동 후 해당 소에게 사료를 먹이며 머물게 한 장소의 형태와 제공된 사료의 종류와 제공방법, 체중의 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달리 이동 후 도축 시까지의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여 일률적으로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인삼류의 경우에는 우수한 특정지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없고 다만 국산이라는 원산지표시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아무리 강화인삼을 강조하였다 라도 이는 지리적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상품명에 해당할 뿐이고 '국산'이라는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였고 국산의 재료를 사용하였다면 '국산'이라는 원산지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산지표시법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해석한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특히 본 사안이 형사적 처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죄형법정주의상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타당한 해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화인삼을 강조하면서 소비자에게 강화산 인삼만을 사용하여 인삼절편을 만들었다는 오인을 불러일으킨 점은 분명 있다. 따라서 사안에서 강화협동조합 등이 잘못된 표시 내지 정보제공을 하여 소비자에게 오인을 불러일으켜 상품을 구매하게 하였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사안은 원산지표시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7조 제1호).

V.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와 개인정보 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²⁸⁾

1. 대상판결 사안과 대법원의 판결 내용

1) 사실관계

중국인 해커로 추정되는 홍성 등은 2008년 1월 3일 경 옥선의 웹서버 중 하나인 이노믹스 서버에 침입하여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관리자 아이디와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2008년 1월 4일부터 2008년 1월 8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이노믹스 서버를 통해 옥선의 메인데이터 2(MAINDB2) 데이터베이스 서버(이하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 서버'라 한다)에 저장되어 있던 옥선의 전체 회원 약 1,800만 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자신의 컴퓨터로 내려 받아 이를 유출(이하 '이 사건 해킹사고'라 한다)하였다. 이후 옥선은 2008년 2월 1일 김○○으로부터 해킹된 옥선 회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금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은 이후에야 이 사건 해킹사고를 경찰 및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2008년 2월 5일 옥선의 회원에게 이 사건 해킹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공지하였다. 인포섹 주식회사는 엘지데이콤과 인터넷 데이터센터 정보보호 서비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엘지데이콤 인터넷 데이터센터에 입주한 옥선에게 이 사건 해킹사고 당시까지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에 옥선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 중 일부가 옥선과 인포섹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다수 제기하였다.

한편, 이 사건 해킹사고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옥선의 회원 중 일부는 그 무렵 한국소비자원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08년 12월 3일에 옥선이 이 사건 해킹사고 당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술적 보안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개인정보가 전부 유출된 이용자들에게는 각 10만

28) 본 판결에 관한 평석 내용은 이병준·김건호,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 소개 - 소위 '옥선 판결'을 중심으로 -, 주간기술동향 통권 1693호, 2015, 13-24면을 축약한 것이다.

원씩, 일부만 유출된 이용자들에게는 각 5만 원씩 각각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하였다.

2) 소송의 경과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는 모두 네 개의 1심 판결²⁹⁾과 원심 판결³⁰⁾이 있는데 1심과 원심 판결 모두는 옥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의 의무 혹은 계약상의 의무 위반이 없다거나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이 없다는 이유를 흔쾌해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포섹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고, 원고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도 있지 않으며, 이 사건 해킹사고 당시 엘지데이콤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이행으로 침입탐지 및 침입차단시스템의 운용, 침해 위협 상황 전파, 침입탐지 및 침입차단시스템의 로그 분석, 탐지 이벤트에 대한 IP 차단, 웹쉘 탐지, 장애 및 침해사고 분석보고서 제공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없다고 판시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옥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와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자로 하여금 이용약관 등을 통해 개인정보 등 회원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수집하였다면, 위와 같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이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률상, 계약상 의무를 인정하였다.

한편, 정보통신 서비스는 개방성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기준들을 실시한 후, 이러한 기준에서 옥선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옥선이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해킹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인포섹이 보안관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해킹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태도는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법령에 부과된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계약상의 의무도 함께 부담한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8가합31411, 58638(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14. 2008가합45021, 55097(병합), 111010(병합), 2009가합26034(병합), 127661(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8가합60808, 86220(병합), 110779(병합)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4. 6. 선고 2008가합5046 판결 등 참조(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모두 동일한 재판부에서 선고되었다).

30) 대구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0나39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0나31510, 31527(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8. 선고 2010나31534, 31572(병합), 31565(병합), 31541(병합), 31558(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2. 선고 2010나29555, 29562(병합), 29579(병합) 판결 등 참조.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¹⁾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32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위 제28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이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법한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 및 이에 대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까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은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환시키는 규정으로 파악되고 이는 이용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용이하도록 하는 입법취지로 보인다.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로부터 계약(주로 약관의 형태를 취할 것이다)에 의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면, 이를 계약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부수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만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이용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이러한 법률상 의무와 계약상 의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가령, 정보통신망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한 경우에는 언제나 계약상 의무도 준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률상 의무와 계약상 의무는 구별되므로 양자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이 동법 제28조의 위반효과로 이용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 외에도 공법적 제재처분인 과태료를 예정하고 있는 바, 공법과 사법은 구별된다는 법원칙의 관점과 관련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략)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사건 고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법률상 의무와 계약상 의무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우선 공법과 사법은 그 규율목적과 대상에서 차이가 있고 이는 특히 계약법에서 두드러진다. 즉, 행정법 영역에서 수범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의 기준은 입법 혹은 하위법령의 제정 시기와 상황에 따라 규율의 정도가 결정되는데 반해 계약상 의무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급부의 내용과 그 해석상 인정되는 내용에 의해 결정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방당사자가 이러한 행정법규를 준수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계약상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공법상의 제재기준은 사법상의

31)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2. 29. 행정안전부령 제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부령’이라 한다) 제3조의3 제1항은 위 법의 위임을 받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해야 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과학적 조치로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부령에 의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위법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참고자료는 될 수는 있어도 그 절대적인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공법상 규제보다 강화된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령,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옥션은 해킹사고 당시 내부 관리 지침에 위배하여 이노믹스 서버 관리자 및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 서버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였고, 톱캣 서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초기설정 상태 그대로 변경하지 않았던 사실, 2008년 1월 4일 이노믹스 서버에 설치된 'hacktool.wci' 등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같은 달 8일 웹шел인 'ASP 목마2006'을 발견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으로부터 금품을 요구 받을 때까지도 해킹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옥션이 취하고 있던 보안조치들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외형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옥션이 제정한 내부 관리 지침이 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혹은 계약상 부수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지에 따라 옥션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었다고 보인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그렇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존재하여도 구체적인 해킹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의 내용이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무엇인지 문제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종·영업규모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②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그 효용의 정도, ③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가능성,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대법원은 정보통신부령의 위임을 받은 정보통신부 고시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준수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해킹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부 고시가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의무위반이 없음을 인정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도 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평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적·관리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이에 대한 준수를 촉진시키고 해킹사고 발생 이후 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용이성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이러한 대법원 판시의 전제는 정보통신부 고시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해킹 방지조치에 적정한 수준이므로 이를 준수한 경우 의무위반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시가 변화하는 정보통신 보안상황에 언제나 부응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해킹 방지조치의 최소치만을 규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또한 앞서

본 정보통신망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해킹사고 발생 시 일반 불법행위와는 달리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환시키고 있고 이는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엄격한 책임을 물으려는 취지로 보이는 바, 대법원의 판시가 이러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고시의 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고시상의 기준만을 충족시키고 그 이상의 보호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할 우려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시행(2014년 8월 7일)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는 등 사업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수집 자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보통신망법이나 고시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 기준을 일괄적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중요도를 감안하여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하다. 즉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상태에서 이를 다양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더 강력한 보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유출사고 발생 시 그 의무위반을 쉽게 인정할 여지를 만들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스스로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려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Ⅶ. 수분양자의 지위 양도와 표시광고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분양광고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어느 정도 확립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분양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당사자들이 광고내용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광고도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전분양 후 건축이라는 아파트 건축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직접 아파트를 보지 않고 광고와 모델하우스 등만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고려한 것이다. 대상 판결은 이러한 광고를 믿고 거래한 당사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특히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도 어떠한 요건 하에서 어떠한 내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연관되어 있다(본 판결은 다른 쟁점도 문제되었으나, 이 쟁점을 한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대상판결 사안과 대법원의 판결 내용

분양회사 A는 부산 해변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수분양자 甲은 A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됐다. 허위과장광고는 '분양광고 당시 해양공원에 어떠한 시설이 설치되고 언제까지 완공될 것인지 등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분양회사가 해양공원아파트라는 차별화된 특징을 가진다고 강조하면서 아파트 앞 바닷가에 호텔·컨벤션센터, 콘도·위더파크, 광장·쇼핑몰(유명 브랜드숍)·시푸드레스토랑 등으로 구성된 해양공원이 조성될 것이며, 해양공원은 아파트와 연계해 분양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해양공원이 완공되지 않으면 아파트의 준공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대법원은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해양공원의 완공을 신뢰하게 한 점 때문에 허위·과장광고'로 보고 분양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수분양자 甲이 분양권전매로 수분양자 지위를 乙에게 양도했을 경우 乙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당연히 이전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받은 乙은 당연히 분양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전받는다

판결했으나 대법원³²⁾은 판단이 달랐다. 즉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는데,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이 이전될 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수인이 당연히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허위·과장광고를 그대로 믿고 허위·과장광고로 높아진 가격에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는 등으로 양수인이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양수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였다.

2.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와 표시광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본 관례상 특이한 쟁점은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제3자가 불법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표시광고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의 포괄적인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인수이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의 지위양도가 일어나면 양수인은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계약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으므로 가령 아파트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상의 권리는, 수분양자가 지위를 양도할 당시 양도인이 행사하려고 유보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귀속하게 된다. 그에 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수분양자가 입은 구체적인 법익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지위 이전과는 무관한 것이 원칙이다.

본 사안의 경우 대법원 판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는 수분양권의 실제 가격과 허위·과장광고가 없었을 경우 수분양권의 적정한 가격의 차액이다. 그런데 이러한 허위·과장광고의 내용은 일정한 경우에 계약의 내용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 즉 아파트와 관련된 내용 중 일정한 부분은 아파트의 성질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기도 하므로 이러한 내용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의 책임도 문제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계약상의 책임을 동시에 유발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상의 책임과 상관없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사안에서는 문제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상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순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었다. 따라서 계약상의 지위이전과는 전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분양자의 지위이전이 되었다고 당연히 양도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전받은 자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하여 높은 가격으로 이전을 받았다면 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VII. 국제사법 제27조와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대법원 2015.3.20. 선고 2012다118846,118853 판결)

대상판결의 사안은 사업자 사이의 선박보험이 체결되었고 선박보험에 적용되는 협회기간약관

32) 대법원 2015.07.23. 선고 2012다15336,15343,15350,15367,15374,15381,15398,15404 판결.

[Institute Time Clauses (Hull-1/10/83)]에서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 및 관례에 준거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제3조에서 계속담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며, 협회담보약관에는 워런티 조항³³⁾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영국법상 워런티 조항의 내용과 효력, 그 위반의 효과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에 의하여 협회담보약관이 이 사건 선박보험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지가 문제되었다.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제사법 제27조³⁴⁾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국제사법 제27조에서 소비자계약에 관한 강행규정의 범위 안에 약관규제법은 포함되지만, 약관규제법은 그 적용대상이 고객으로서 고객의 범위 안에는 소비자는 물론 사업자가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 사이의 계약에는 제27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선언하였다. 즉 “국제사법 제27조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소비자계약에 관한 강행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는 점이나 약관규제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당연히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등 참조)”는 것이다. 즉 사업자 사이의 계약에는 국제사법 제27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한국 약관규제법이 준거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약관규제법을 근거로 설명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당 규정의 불편입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약관규제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 입장은 타당하며, 기존에 학설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이다.³⁵⁾

VIII. 해외직구에서 관세부과대상으로서의 화주의 판단기준

1. 판결사안과 판결의 내용

국내 소비자가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해외 판매자인 미국 현지법인 네이처웨어(NATUREWARE, INC.)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을 직접 구매하고 소액면세물품으로 배송받아 관

33) 워런티 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이정원, 2015 영국보험법상 워런티의 의의와 법률 효과에 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150호, 2015, 115면 이하.

34) 제27조(소비자계약) ①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1.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2.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3.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로서 하여금 외국에 가서 주문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 ②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식은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합의는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2. 소비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35)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박영사, 2013, 337면; 이병준,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가능성: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 197면; 고희석, 해외구매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8권 제1호, 2014, 111면.

세 등을 면제받았다. 서울세관은 국내 판매자인 甲이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음에도 동생 乙이 설립한 미국 네이처웨어를 이용하여 마치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관세 등을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5억 원의 관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甲은 서울세관을 상대로 “구매자들의 신청을 받아 구매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 물건을 직접 수입해 판매하는 쇼핑몰이 아닌데도 5억여 원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관세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³⁶⁾은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이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개설되어 판매물품의 현금결제, 반품 및 환불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 반품된 물품이 원고에 의하여 국내에서 전량 재판매되거나 폐기처분된 점, 원고가 판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 및 수입화주로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³⁷⁾은 “관세법상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인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인데, 여기서 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³⁸⁾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물품을 수입한 명의자와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법리를 전제 한 후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의 편의나 해외 판매자의 판매촉진·반품 등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서는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사업자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외 판매자와 국내사업자, 그리고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하고, 실령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소득이나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내사업자를 실질적인 해외 판매자로 보아 그와 국내 소비자 간에 수입 거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에 별도의 국내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여전히 국내 소비자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에서 국내 소비자는 자신이 화주가 되어 해외로부터 직접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국내 소비자가 국내 거래를 통하여 원고가 수입을 마친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시 구입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다.

2. 해외직구의 유형과 화주의 판단기준

해외직구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도 누가 화주인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분석했어야 한다. 즉 해외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36) 서울고법 2013. 12. 27. 선고 2012누28348 판결.

37)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

38)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기준이 되었어야 하였다. 즉 소비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였는지, 아니면 구매대행업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구매가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보았어야 하였다.³⁹⁾ 이러한 점을 간과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IX. 여론: 소비자단체소송의 제기

최근에 소비자연맹을 통하여 SKT 등 통신3사와 T-Money 카드를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카드를 대상으로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이 제기되었다.⁴⁰⁾ 2015년 봄에 소비자연맹에 공익센터를 새로 개소하고 부산대학교의 서희석 교수를 새로 센터장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단체소송 준비를 하여 작년 12월에 드디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⁴¹⁾ 앞으로 단체소송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9)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으로 인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이병준,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구매 대행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법 및 국제사법상의 쟁점, 성균관법학 제26권 제4호, 2014, 422면 이하; 고희석,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8권 제1호, 114면 이하 참조.

40) 아시아경제, “소비자연맹, 한국스마트카드·이통3사 대상 공익소송”, 2015. 12. 17.자 기사(<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21707352380256>).

41) 서희석, “移通3社 상대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며”, 법률신문 2015. 12. 28.

[참고문헌]

- 고형석, 해외구매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8권 제1호, 2014.
- 고형석, 개인정보침해와 손해배상책임의 원칙, 저스티스 통권 제145호, 2014.
- 김강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와 죄형법정주의의 관계 - 횡성한우 사건, 대법원판례해설 제94호, 2012년 하, 법원도서관, 2012.
- 김자영·백경희,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 서울법학 제23권 제2호, 2015.
- 사동천,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홍익법학 제11권 제2호, 2010.
- 서희석, “移通3社 상대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며”, 법률신문 2015. 12. 28.
-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박영사, 2013.
- 성중탁,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찬반양론을 지켜보며, 법률신문 판례평석, 2014. 1. 19.
- 송재일, 개인정보보호의 민사법적 쟁점, 법학연구 제54호, 2014.
- 윤진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판결의 장래효에 대한 의문, 법률신문 연구논단, 2015. 8. 6.
- 이병준, 현대 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 집문당, 2013.
- 이병준,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가능성: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
- 이병준,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구매 대행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법 및 국제사법상의 쟁점, 성균관법학 제26권 제4호, 2014.
- 이병준·김건호,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 소개 - 소위 ‘옥션판결’을 중심으로 -, 주간기술동향 통권 1693호, 2015.
- 이성환, 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향 - 소비자보호법의 전면개편과 관련하여, 공법학연구 제6권 제1호, 2005.
- 이수완, “부정경쟁방지법상 허위의 원산지 표시”, 대법원판례해설 41호, 2002.
- 이원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법상 규제와 손해배상책임, 행정법연구 제30호, 2011.
- 이정원, 2015 영국보험법상 워런티의 의의와 법률 효과에 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150호, 2015.
- 이진기, 사적자치의 실현을 위한 민법의 과제, 인권과 정의 제454호, 2015.
- 이혁,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34권 제1호, 2015.
- 장운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 동아법학 제69호, 2015.
- 정상조·권영준, 개인정보의 보호와 민사적 구제수단, 법조 630, 2009.
- 최호진,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유출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법조 689, 2014.
- 노컷뉴스, “농식품 원산지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2016. 2. 5.자 기사(<http://www.nocutnews.co.kr/news/4544461>).
- 로이슈, “대법원 “타 지역 인삼 섞인 ‘강화홍삼절편’ 원산지 표기 위반 아냐”, 2015. 4. 19.자 기사(<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1>).
- 미트 비즈니스저널, “전국한우협회, 원산지표시 위반 20개 업소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 2015. 10. 16.자 기사(<http://www.meatbusin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
- 법률신문, “홍삼 제조 때 그 지역 인삼 100% 사용 안해도”, 2015. 4. 20.자

기사(<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543&kind=AA01>),
세계일보, “벌금 내도 몇배 남아…원산지 눈속임 '검은 유혹'”, 2014. 9. 4.자
기사(<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9/03/20140903004358.html>),
아시아경제, “소비자연맹, 한국스마트카드·이통3사 대상 공익소송”, 2015. 12. 17.자
기사(<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21707352380256>).